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이 태 윤

한반도 휴전체제 변천과 한국 안보에 관한 연구

- 베트남 휴전협정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Changes on the Korean Armistice Regime
for National Security Problems in S. Korea

2004년 8월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지역학과

동아시아지역전공

송 석 명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이 태 윤

한반도 휴전체제 변천과 한국 안보에 관한 연구

- 베트남 휴전협정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Changes on the Korean Armistice Regime
for National Security Problems in S. Korea

위 논문을 국제지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8월 일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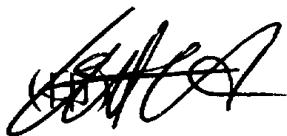
국제지역학과

동아시아지역전공

송 석 명

宋錫明의 國際地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4年 6月 日

審査委員長 황해성 

審査委員 김능우 

審査委員 이태운 

목 차

국문초록	iv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휴전협정에 관한 일반적 고찰	3
제1절 국제법상 휴전협정의 개념	3
제2절 국제법상 조약의 의미와 구분	4
1. 조약의 일반적 의미	4
2. 조약의 구분과 분류	5
제3절 한국 휴전협정에 대한 국제법적 성격	13
1. 휴전과 정전의 의미	13
2. 한국 휴전협정의 성격규명과 국제법적 성격	16
제3장 한국 휴전협정과 베트남 휴전협정의 비교 분석	26
제1절 한국 휴전협정(1953)의 체결과정과 이행경과	26
1. 체결배경 및 경위	26
2. 협정의 내용	32
3. 체결당시 관련 당사국의 입장	35
4. 협정의 이행 경과	38
제2절 베트남 휴전협정(1954)의 체결과 이행결과	44
1. 체결배경 및 경위	44
2. 협정의 내용	46
3. 체결당시의 관련 당사국의 입장	50
4. 협정의 이행 및 결과	54
제3절 베트남 평화협정(1973)의 체결과정과 이행결과	56
1. 체결배경 및 경위	56
2. 협정의 내용	58

3. 관련당사국 입장	60
4. 협정의 이행 및 결과	62
제4장 한국 휴전체제의 변천과정	70
제1절 휴전체제의 변천과정 분석	70
1. 제1기(적대적 협조기 : 1953.7 - 1991.3)	70
2. 제2기(적대적 침체기 : 1991.3 - 1994.4)	71
3. 제3기(적대적 단절기 : 1994.4 - 1998.6)	71
4. 제4기(적대적 파행기 : 1998 - 현재)	72
제2절 파행적 휴전체제 : 유엔사 - 북한군간 장성급 회담	74
1. 추진경위	74
2. 이행경과	75
제3절 한국 휴전체제의 평가 및 전망	81
1. 한국 휴전체제의 의의	81
2. 평가	82
3. 전망	83
제5장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발전방향 모색	85
제1절 평화조약 체제전환에 따른 방향과 방안	85
1. 휴전협정 수정방안	85
2.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실천방안	86
3. 민족공동체헌장 채택방안	87
4. 평화조약 체결 방안	88
제2절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을 위한 발전방향	89
1. 국제적 보장방안	89
2. 국내적 보장방안	92
제6장 결 론	94
<부 록>	97
참고 문헌	100
ABSTRACT	105

표 목 차

<표 2-1> 휴전과 정전의 비교 및 한국 휴전협정의 성격분석	15
<표 2-2> 한국 휴전협정의 성격	16
<표 3-1> 북한의 휴전협정 체제 무실화 책동 주요내용	43
<표 4-1>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회담	76

그림 목차

<그림 4-1> 군사정전위원회 체제의 변경 경과	73
<그림 4-2> 북한의 군사정전위 운영 전략전술	80

국문초록

한반도 휴전체제 변천과 한국 안보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Changes on the Korean Armistice Regime for National Security Problems in S. Korea

국제지역학과 송석명
지도교수 이태운

본 연구는 한국전쟁 휴전 이후 5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일한 국제법적 장치로서 한반도의 정전(停戰)과 안정에 기여해온 ‘한국휴전협정’을 고찰하여, 향후 한반도 휴전체제와 관련된 한국 안보문제들에 대한 대책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논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휴전협정’에 대한 용어의 정립(定立)이다. 지금까지 한국휴전협정을 칭할 때 학자와 사용자들의 관점에 따라 ‘정전협정’ 또는 ‘휴전협정’이라는 명칭이 혼용 사용되어왔다. ‘정전협정’이란 용어는 1953년 유엔측과 조·중측간에 조약으로 맺어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관한 문서에서 연유된 고유명사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쟁을 중지한 휴전자체를 뜻할 경우는 ‘휴전협정’이란 용어를 사용함이 타당함을 규명하였다.

다음은 협정당사자 문제이다. 휴전협정 조인에 있어서 한국은 엄연한 국제법적 조약 체결대상자이면서도 협정 조인에 직접 당사자로서 조인하지 못한 점이다. 따라서 지금껏, 협정에 관련된 제반 현안 문제들을 이행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휴전협정에 대한 협정의 일방 체결 당사자인 북한에 비하

여 한국의 입장은 항시 불리하고도 수세적인 입장에 있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협정 체결당시 협정 내용의 합의(부속합의서 포함)에 있어서 몇가지 유념했었어야 했던 사항들, 즉 협정을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쌍방간에 긴장을 보다 감소시키고 인명피해를 배제 내지는 감소 할 수도 있는 조항들에 대한 미비점이다. 예컨대, 해상에 있어서의 확실한 해상 분계선을 확정하지 않은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의 조·중측과 유엔사측의 경비초소 설치시 불균형 문제점등의 예들은 추후 타협정으로 전환시 협정 내용작성에 필히 고려되어야 할 사례들이다.

다음은 휴전협정 내지는 평화조약에 대한 신뢰 문제이다. 오늘날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간의 조약이란 체결당사자간의 명시적인 약속이라고는 하지만 역사상 사례들에서 보듯이 국가이익이 극도로 추구되는 현실정치에 있어서, 국가간의 조약 이행에 따른 확고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하물며 쌍방간의 적대행위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고자 맺은 군사휴전협정은 국제법적으로도 어느 일방이 파기하고자 하면 이를 제제할 수는 없다. 그 좋은 예로서 베트남에서의 1954년 휴전협정, 1973년의 평화협정을 들 수가 있다. 아무리 완벽한 조약이라 하더라도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을 때는 조약의 효력 측면에서 그것이 비록 역사적 기록문서의 하나가 될 수 있을지라도 협정으로서의 역할은 기대 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 휴전협정은 완전한 종전이 아닌 적대행위의 일시적 중지에 불과하고, 북한측의 계속적인 휴전협정 무실화 책동으로 인해 협정자체가 거의 파행적으로 운영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북측은 현실에 맞는 한반도 평화유지를 다룰 대체기구의 필요성을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2중적인 기본전략으로써, 겉으로는 평화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안으로는 한반도 적화통일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즉, 그들이 휴전협정 체제하에서 추구하는 기본전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북한은 아직도 대남 적화통일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1차적으로는 남·북·미간 '3자군사공동기구'를 실현시켜 유엔사를 무실화하고, ②3자군사공동

기구가 실현되고 나면 한국은 휴전협정 비서명 당사자라는 명목하에 미·북간 2자군사회담을 요구하면서 한국을 배제시킨 후, ③2자군사회담을 통하여는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한편, 남한내에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혁명력량을 강화시켜 직간접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 미군철수를 유도하고, ④미군철수가 실현되면 무력공격을 통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이루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최근 김정일의 중국 방문시에 신형 전투기 구입 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휴전체제하 회담전략은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군정위 기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한국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 몇가지 대책들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대북 억제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하여 동맹정책을 강화해야한다. 동서고금을 통해 보더라도 일국(一國)이 다국적연맹을 도외시킨채 단독으로 국방력을 완벽히 구현한 예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는 세계 최대의 군사 강국인 미국이라 할지라도 동맹국 없이는 국가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현재의 이라크전 상황은 반증하고 있다.

둘째, 국가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위하고 자조(自助)할 수 있는 자주적 국방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자조적 국방력을 갖추지 못한 채 맺은 협정은 결코 사상누각임을 베트남의 사례에서 볼수 있다. ‘파리평화협정’(1973.1.27)이라는 국가간에 맺어진 평화협정이 맺어 진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전쟁이 재개되어 월남은 공산화되었던 것이다.

셋째, 동맹국은 물론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통하여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함은 물론, 현 휴전협정체제가 평화체제로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도 다방면으로 국제공조를 이루어야 하겠다.

넷째, 무엇보다도 한국은 향후 평화조약 체결시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단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타협정으로의 전환에 대비한 각종 완벽한 협정안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준비해 놓아야한다.

현재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 휴전협정을 관리하고 있지만, 지

금 이라도 북한이 휴전협정을 파기하고 전쟁상태로 돌아간다면, 과거처럼 유엔의 주도하에 참전 16개국이 한국을 위해 군사지원을 해줄지는 의문이다. 왜냐면, 한국전쟁 당시와는 달리 이제는 남·북 모두 유엔 가입국이 되었고, 참전 16개국 중 미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국가들이 북한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오늘날의 정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휴전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는 물론, 참전 16개국과의 관계도 긴밀히 유지하여 유사시 한국을 재지원하는 우방으로서의 관계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함이 가장 절실히 요구될 때이다.

이상의 요구들이 충족되어진다면, 한국은 현행 휴전체제하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 나가면서, 향후 휴전체제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지라도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북한의 무력공격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전쟁 발발후 3년여 만인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The agreement of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의 체결로 쌍방간 적대행위는 정지되었고, 휴전협정에 설치된 군사분계선에 의해 남·북 분단은 더욱 고착되어 가고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반세기가 지난 이 시점에서 한국 휴전협정은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어떻게 기능해 왔으며 또한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리고 한반도와 안보환경이 유사했던 베트남은 평화조약에 의거해 전쟁을 종결 짓고도 왜 공산화 되었는가? 따라서 한국이 베트남의 공산화 과정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 휴전체제의 운영과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두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이론적·실제적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한국전쟁의 휴전을 위해 체결된 ‘한국정전협정’에 관하여 보다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고찰을 통하여 한국 휴전협정에 대한 성격규명과 아울러 휴전협정 당사자 문제와 국제법상 성격을 살펴보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해 있는 현 상황하에서 만일 북한이 휴전협정(또는 평화조약)을 파기하고 재침 할 시에는 국제연합과 한국의 입지는 무엇인가 하는 한국휴전체제의 현상(現狀)에 관하여 고찰하고자한다.

둘째, 한국 휴전협정과 유사한 점이 많은 베트남에서의 협정 결과를 통하여 도출되는 교훈이 한국 휴전체제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셋째, 휴전협정 체결 후 체결된 협정의 변천과정 분석을 통하여 북측의 저의를 진단해보고 그에 대한 앞으로의 휴전체제 운영과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상기 언급한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연구의 범위를 좁게는 ‘한국정전협정’이라는 내용에 한정하였고, 넓게는 한국 휴전협정 체제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론적 면과 국제법적인 측면을 병행해서 고찰했다. 또한 실제적인 면에서는 타국에서 있었던 휴전협정 및 평화조약을 연구·비교·분석하는 등 국제정치와 군사적인 환경 측면을 포함하였다.

본 논문의 시간적 범위는 주로 휴전협정 체결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50년간이 초점이 되고는 있으나, 현행 및 향후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한간 관계 및 미·북간 관계 그리고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의 입장등 국제적 상황 변화에 따르는 불확실하고도 무기한적인 범위와 시기가 고려되었다. 이를 위한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한국 휴전협정에 관하여 이론적인 면과 국제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여 휴전협정에 관한 성격규명과 국제법적 성격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 휴전협정과 체결배경·시기·과정·안보상황등이 유사한 베트남 휴전협정과 한국 휴전협정을 연구 상호 비교·분석을 통하여 교훈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 휴전협정 체제의 변천과정 분석을 통하여 북측의 저의를 진단해서 한반도 휴전체제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최선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하여 현행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방안을 제시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각종문헌·인터넷·신문기사등 문헌조사 분석방법을 따랐으며, 특히 ‘한국정전협정’에 관한 내용분석과 관련해서는 협정 원본의 사본등 역사적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또한 4년여 동안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한국군 연락단장으로서 북한군과 협상하는 현장에서 근무한 본 연구자의 실무경험과 업무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

제2장 휴전협정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국제법상 휴전협정의 개념

‘휴전협정’이란 조약의 한 종류이고 국제법에 규율 되는바, 휴전협정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법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이란 국가간에 명시되거나 묵시된 합의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으로 정의 될 수 있다. 국제공법(國際公法)이라고도 하는 국제법은 국가 상호간에 명시된 합의에 바탕을 둔 조약국제법과 여러 국가의 관행을 기초로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관습국제법으로 성립되고 있다.¹⁾

국제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국제법에서도 위반사항에 대하여 전혀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피해국에 의한 자조(自助)행위가 일반적으로 제재수단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사실 외에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지만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 같은 국제조직에 의한 집합적 제재의 형태도 인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법을 법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제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권력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법에 비하여 법의 제정·적용·집행면에서 다른 특징이 인정되고 있다. 즉, 국제법의 특징은 국내법과 같은 입법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명시된 법 제정 절차를 취하는 조약은 국가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지 국가를 초월한 입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다수의 국가에 관계되는 다변적 조약에서 조약안이 국제조직에서 심의·채택되는 예가 많아졌지만, 이런 경우에도 국가의 서명 또는 비준이 없으면 조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입법기관이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조약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며, 또한 현실과 조약내용과의 사이에 차질이 생긴 경우에 그것을 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국제법의 적용에 있어 재판의 기능에

1) 이한기, 『국제법강의』 (서울 : 박영사, 1986), p.15.

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국내법의 경우에 재판은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강제적으로 행해지지만, 국제법의 경우에는 분쟁당사국 쌍방의 동의 없이는 재판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19세기에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것처럼 분쟁이 있을 때마다 당사국의 합의에 의해 재판관을 선정하는 중재재판의 형태를 대신하여 오늘날에는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상설적인 국제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의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재판에 회부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이른바 법률적 분쟁이 재판에 회부되지 못한 채로 있는 예가 많다.

국제법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국제법의 침해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는 강제적인 절차가 충분히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제재의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피해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대항하는 행위인데, 이 수단은 상대가 강대국일 경우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 제 1, 2차 세계대전 후로는 각종 위법적 무력행사에 대하여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주도에 의한 여러 나라의 협력으로 대항하는 집합적 제재의 형태를 볼 수 있게 되었다.²⁾ 그러나 집합적 제재라 하더라도 각국의 협력을 기초로 하는 데다가 상대가 강대국인 경우에는 세계전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주저하는 일이 보통이어서 제재면에서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

제2절 국제법상 조약의 의미와 구분

1. 조약의 일반적 의미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제1항에서는 조약(treaty)³⁾의 정의를 “국가간에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2)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1588호(유엔통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결의,1950.7.7)

3) treaty라는 용어는 프랑스어인 trait(교섭·협상)에서 연유하며, 17세기 말엽부터 라틴어conventino publica(공공협약) 및 foedus(동맹)에 대치되어 외교용어로 사용된 데 그 어원을 두고 있다.

합의이다. 단일 문서 또는 2개 이상의 관련문서로 구성되었는가, 또는 그 명칭을 어떻게 하는가는 문제가 되지않는다” 라고 하였다.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가이지만,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교전단체 및 국제기구도 국제적 합의의 주체가 된다. 조약은 서면형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명시적인 합의이어야 하며, 묵시적인 합의인 관습국제법과 구별된다. 조약체결의 능력·절차·효력에 관하여는 국제법상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당사국은 가입 후에 체결하는 모든 조약을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⁴⁾

조약은 단일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의정서·의사록·교환공문등의 부속문서를 함께 작성할 수도 있으며, 조약을 보완할 목적으로 활용된다. 조약이라는 용어는 특히 구체적으로 ‘조약’이라고 명시한 국제적합의에 한정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국제법 주체간의 모든 형태의 명시적 합의를 총칭하는 넓은 뜻으로 쓰인다. 그러나 이들 명칭의 차이가 합의의 내용이나 효력의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인 국제 관행에 의하면, 협약은 국제회의에서 성립된 다수국가간의 입법적 성격의 조약에 사용되고, 협정은 행정협정과 같이 절차상 행정부가 주도하여 체결하는 국제적합의에 쓰이는데,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간의 합의에는 협정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국제연맹의 기초조약에는 규약, UN에는 헌장,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규정 등의 용어를 택하였고, 특정조약의 수정·보완을 목적으로 할 때는 의정서라는 용어가 흔히 채택된다.

2. 조약의 구분과 분류

가. 조약의 형식

조약의 형식도 조약의 명칭과 같이 법적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온 관행을 검토해 보면 다음의 몇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⁵⁾

4) 유병화, 「국제법 I」 (서울 : 민영사, 1998), p.135.

1) 국가 원수간에 체결되는 형식

과거에는 특히 장엄한 조약의 형식으로 국가 원수간에 체결되는 형식을 취하였다. 국가의 대통령 · 황제 · 군주 등으로 표시된다.⁶⁾

2) 정부간에 체결되는 형식

이 조약은 관계국가 정부간에 체결되는 형식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형식 중의 하나다. 보통 비정치적 조약 즉, 기술적 행정적 조약에 많이 사용되는 편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3) 국가간에 체결되는 형식

비교적 중요한 조약은 국가간에 체결되는 조약형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⁷⁾

4) 국가와 국제기구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간에 체결되는 조약형식

근래에 와서 국제기구의 활동이 급증함에 따라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상호간에 조약이 빈번하게 체결되고 있다. 이 경우에 국가를 표시하기도 하고 정부를 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1978년 한국과 유엔간의 '유엔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은 'New exchange of letters relating to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to be enjoyed by the United Nations in Korea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로 표시되고 있다.⁸⁾

5) 기타

예외적으로 조약은 다른 방식으로 체결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관계부처

5) 상계서, pp.143~145.

6) 예컨대 'the crown of the united kingdom' '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는 명칭을 사용하며 조약당사자도 'high contracting parties'라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많이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7) 1953년 한·미 방위조약이 그것으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으로 표시된다.

8) 국방부, 『외무부 조약목록집』, (1985), pp.214-215.

장관간에 체결되거나 관계국가 정부 기관간, 또는 전쟁 중 군총사령관(軍總司令官)간에 체결되는 경우도 있다.⁹⁾

나. 조약의 분류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조약을 완전하게 분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조약자체가 다양하고 또한 동일한 조약이 여러 가지 실질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1969년 비엔나협약도 일방적인 분류를 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적당한 기준에 의해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체계적인 설명을 하기 위하여 분류가 필요한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대체로 두 가지 분류방법을 따르고 있다.¹⁰⁾

이는, 조약문서나 당사자수와 같은 외적·형식적 기준에 의하는 형식적 분류와 조약의 내용이나 그 법적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실질적 분류이다.

1) 실질적분류

가) 일반적 내용분야에 따른 분류

조약의 일반적인 취지 또는 내용분야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로서, 통상협정조약·지불협정조약·문화협정조약·법규칙제정조약등 그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 할 수 있다.

나) 법규조약과 계약조약

19세기초부터 학자들은 추상적 규칙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집단조약과 구체적·주관적 내용의 양자조약을 구별하였는데 집단적 조약은 국내법규에 가

9) 예를 들면 1972.10.14 미국·소련 관계부처 장관간의 해사협정(海事協定)은 미국의 상무장관 피터슨(Peterson)과 소련의 해무장관 구젠코(Guzhenko)간에 체결되었다. 또한 한국 전쟁 중 휴전협정은 유엔측 총사령관 클라크(Mark W. Clark)와 공산측 총사령관인 김일성 인민군 사령관과 팽덕회 중국 지원군 사령관이 서명하였다.

10) 유병화, 전게서, pp.145-148.

잡다 해서 법규조약이라 하였고 양자조약은 계약과 비슷하다고 하여 계약조약이라 하였다.

다) 일반조약과 특별조약

국제사법법원 규약 38조 1항에 의하면 조약을 일반조약과 특별조약으로 구분하고 있다. 조약의 목적과 대상이 일반적이냐 특별한 것이냐에 따른 구분이다.

라) 규범조약과 국제기구설립조약

현대 국제사회에서 국제기구의 설립이 급증함에 따라 국제법의 새로운 분야가 형성되었는데, 이에 따라 조약을 규범조약과 국제기구 설립조약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¹¹⁾

2) 형식적 분류

가) 조약 체결절차에 따른 구분

조약체결절차가 정식이나 약식이나에 따라 정식조약(正式條約: formal treaty)과 약식조약(略式條約: agreement in simplified form)으로 구분된다. 정식조약은 전통적으로 발전되어 온 모든 절차를 다 거치는 조약이다. 다시 말해서 조약문의 인증(認證: authentication)과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표시를 따로 하는 조약체결 방식이다. 이에 대하여 약식조약은 서명만으로 조약이 체결되는 간단한 형식의 조약이다.¹²⁾

나) 조약당사자 종류에 따른 구분

조약당사자가 국가나 국제기구냐에 따른 분류다. 즉 국가간에 체결한 조약, 국가와 국제기구간에 체결한 조약, 국제기구 상호간의 조약으로 구분된

11) 1969년 비엔나 협약 5조와 1986년 비엔나 협약 5조는 다같이 국제기구설립 조약을 인정하고 있다.

12) 약식 조약은 원래 미국의 대통령이 상원의 간섭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발달한 행정협정에서 유래한다. 또한 휴전협정도 성질상 당연히 약식조약이다.

다.¹³⁾

다) 국제기구 개입에 따른 구분

국제기구가 발달함에 따라 조약체결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가장 발달된 경우를 보면 국제기구의 기관이 직접 조약체결을 주관하여 체결하는 경우이다. 그 다음은 국제기구 후원아래 체결되는 조약으로 국제기구는 단지 조약체결을 위한 국제회의를 주선하여 주고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여주는 경우이다. 끝으로 국제기구간의 개입 없이 체결된 조약으로 국제기구와 아무런 관계없이 국가들간에 체결되는 경우이다.

라) 당사자 수에 따른 구분

당사자의 수에 따라 양자조약과 다자조약으로 구분된다. 양자조약과 다자조약 사이에 제한된 다자조약을 두어 당사자 수가 셋 이상이지만 별로 많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양자조약과 다자조약 사이에는 법적 성격면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¹⁴⁾

양자조약·다자조약은 그 체결절차나 법적 성격에 있어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 구분이 조약 체결 절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다자조약 체결절차는 최근 국제기구의 발달과 결부하여 매우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유엔총회가 몇몇 국가들의 제의에 따라 1977년부터 국제기구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자조약 체결절차를 검토하고 있다.¹⁵⁾

다. 조약의 명칭

조약의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약, 협약, 협정, 각서교환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있다.¹⁶⁾

13) 1969년 비엔나협약은 국가간의 조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1986년 비엔나협약은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상호간의 조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4) Nguyen. Quoc. Dinh, Dallier et, Alain Pellet, *Droit International Public*, 3 edition, (Paris : L.G.D.J. 1987), p.114.

15) *UN Review of the Multilateral Treaty Making Process*, ST/LEG/SER.B/21, 1985

1) 조약 (條約 : treaty)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1969년 및 1986년 비엔나협약과 1978년 비엔나협약이 모두 조약을 나타내는 표준용어로서 조약 (treaty) 을 사용하고 있다.

2) 협약(協約 : convention)

입법조약의 성격을 띤 다자조약을 의미한다. 대체로 국제사회의 각분야 별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성문법전화(成文法典化)조약을 나탄낸다.¹⁷⁾

3) 협정(協定 : agreement)

조약이나 협약보다는 덜 장엄하고 덜 중요한 조약이다. 보통 당사자수가 적고 형식이 간단한 약식조약(agreement in simplified form)을 의미한다. 또한 기술적·행정적 성격의 조약을 흔히 나타낸다. agreement 와 비슷한 것으로 arrangement가 있다. arrangement는 agreement에 비하여 보다 임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말로써는 다같이 협정이라 부르기도하고 약정(約定)이라 부르기도 한다.¹⁸⁾

4) 각서교환(覺書交換 : exchange of notes)

각서교환은 덜 공식적인 간단한 조약을 나타내거나 일정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부수적 문제를 해결하는 협정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과 미국간의 한·미 문화교류위원회 설치라든가 조개류의 위생처리 같은 간단한 문제를 각서교환으로 체결한다.

각서교환은 한나라의 대표가 각서를 보내면 상대방 국가가 이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하여 동의를 나타내는 식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여러개의 문서로 되어 있게 마련이다. 국제사회가 긴밀해지면서 국가간의 관계가 빈번해지자 사

16) 유병화, 전게서, pp.139-143.

17) 예컨대 유엔 국제법제위원회에서 준비하여 제정한 1961년 외교관계 비엔나 협약,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유엔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제정한 1982년 해양법협약 등이 모두 협약이라고 불리운다.

18) 국방부, 전게서, pp. 81-86.

소한 문제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각서교환이 매우 빈번히 사용되고있다.¹⁹⁾

5) 의정서(議定書 : protocol)

협약보다 격식이 낮거나 부수적인 조약이다. 대체로 중요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조항의 해석, 분쟁해결 방법 등 부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의정서를 두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의정서는 일정한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후에 새로 보충할 내용이 생겼을 때 추가의정서를 체결하기도 한다. 그 밖에 아주 간단한 양자조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사용되기도 한다.

6) 헌장(憲章 : charter 또는 constitution)

헌장은 UN헌장이나 UNESCO헌장 같이 국제기구의 설립조약을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다른 일반조약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charter 또는 constitu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UN의 경우는 charter를 사용하고 UNESCO, WHO, FAO등 많은 전문 기구들은 constitution을 사용하고 있다. 국제연맹의 경우에는 covenant(規約)를 사용하였다.

7) 규약(規約 : covenant)

헌장보다 격식이 낮고 전문적인 것으로, 국제사법 법원규약과 같이 국제기관의 기능 및 운영에 관련되는 규칙들을 모아 놓은 것을 보통 규약이라고 한다.

8) 잠정협정(暫定協定 : modus vivendi)

잠정협정은 나중에 정식으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우선 잠정적 성격의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체결형식이 매우 간단하며 형식을 갖추지 않는다.²⁰⁾

19) J. G. Starke.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9th edition, (London : Butterworth, 1984), pp.225-240

20) *Ibid*, p.412.

9) 의사록(議事錄:proce-verbal)및 합의의사록(合意議事錄: agreedminutes)

의사록이나 합의의사록은 원래 국제회의나 외교교섭의 진행과정과 그 결론을 요약해 놓은 공식문서를 의미하였는데 현재는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도달한 협정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의사록은 또한 비준서 교환이나 비준문서의 기탁을 확인하는 진행기록서로도 사용된다.²¹⁾

10) Concordat

Concordat는 종교문제에 관하여 교황청과 다른 국제법 주체간에 체결하는 조약을 말한다. Concordat는 다른 조약명칭과 달라서 고유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조약명칭과 혼용될 수 없다.²²⁾

11) 기타

그 밖에도 최종의정서(最終議定書: final act)와 양해각서(諒解覺書 : memorandum of understanding)가 있다. 이 중에서 최종의정서는 원래 대규모 국제회의를 종결 짓는 폐막문서다. 이 문서에는 회의의 주요 내용·참석자·결의·선언 등을 담고 있어서 회의 참석 대표들이 서명하게 되어 있다. 더러는 이 최종의정서가 조약이 되는 경우가 있다.²³⁾ 양해각서는 어떤 조약의 부수적 문제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이지만 매우 간단한 조약을 의미하기도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약명칭은 실제 사용에 있어서 상당히 혼동스럽게 쓰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명칭 이외에도 자유로운 명칭을 붙일 수도 있다. 오직 ‘Concordat’만이 고유한 의미를 갖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이 조약명칭이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1969년 및 1986년 비엔나협약은 조약을 정의하면서 그 명칭이 어떠한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⁴⁾

21) *Ibid*, p.419.

22) Concordat는 고유한 의미를 갖고 있어 번역된 말이없고 통상 원어를 그대로 쓴다. 구태어 번역 한다면 ‘정교(政敎)조약’이라 할 수는 있겠다.

23) 1933년 밀수출입 국가회의의 최종의정서 같은 경우는 조약으로 취급된다.

24) 유병화, 전게서, p.143.

제3절 한국 휴전협정에 대한 국제법적 성격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휴전협정은 국가 또는 국제기구라는 국제법의 주체간에 명시적으로 맺어진 국제법상 일종의 조약임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한국휴전협정의 이론적 의미와 국제법적 성격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자.

1. 휴전과 정전의 의미

가. 휴전(休戰)

휴전이란 전쟁 중 휴전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전투를 정지하는 일로서, 교전국의 전전선(全戰線)에 걸쳐 전투를 정지하는 전반적 휴전과 특정지역에 한하는 부분휴전이 있다.

전자는 통상, 나라의 대표 또는 군의 최고급사령관 사이에 체결되고, 비준(批准)을 요하지만, 후자는 현지 군사령관 사이에 체결되고 대개 비준이 필요 없다. 휴전은 평화조약과 달리 전쟁상태를 종료시키는 효과는 없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휴전의 경우 당사자는 적에 통고한 후 언제든지 전투를 재개할 수 있다. 휴전중 군수품의 보급과 진지의 보수 등 비전투행위는 허용되며, 해상봉쇄는 해제되지 않는다. 한편 당사자에 중대한 휴전위반이 있으면, 상대방은 휴전을 파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곧바로 전투를 재개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위법화에 따라, 무력분쟁의 당사자가 전쟁상태의 선명(宣明)을 피하여, 그 결과 평화조약에 의하는 일없이 휴전협상을 통해 사실상 무력분쟁을 종결시키는 사례가 많아졌다. 1949년의 팔레스타인 휴전협정, 1953년의 6.25전쟁의 휴전협정, 1954년의 제네바 협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1973년의 베트남 평화협정처럼 정전이 무력분쟁의 종결을 가져온 예도 있다. 이런 종류의 휴전이나 정전의 경우, 국제연합과 제3국에 의한 휴전감시 기관이 설정되는 일이 많다. 단, 그 법적 의의는 미확정으로, 휴전위반을 이유로 하는 무력분쟁 재개의 가능성도 부정하지 못한다.²⁵⁾

25) 『세계대백과사전』 31권, (서울 : 도서출판한교, 1988), p.548.

나. 정전(停戰)

정전의 본래의 뜻은 전쟁 중 현지 지휘관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일정한 지역내의 전투행위를 정지하는 것으로, 휴전에 비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제한된 전쟁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정전은 일반적으로 전사상자의 수용, 포로의 교환, 사망자의 매장 등을 위하여 또는 항복이나 휴전을 교섭하기 위하여 행해지며, 군대의 각급 지휘관은 그가 지휘하는 부대에 대한 정전을 합의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의미의 정전과는 달리, 휴전과 거의 다름없는 정전이 행해지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국제법상 전쟁 자체가 위법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전포고를 한 후 공공연하게 실시하는 전쟁이 극히 드물게 되어 휴전 대신 정전이라는 명목으로 무력분쟁의 전면적인 중지나 사실상의 전쟁종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카슈미르 분쟁에 대한 1949년의 인도 파키스탄간의 정전합의, 제1차 인도 차이나 전쟁을 사실상 종결시킨 54년의 제네바 협정에 의한 베트남·프랑스간의 전투정지, 베트남 전쟁을 사실상 종결시킨 73년의 파리 평화협정에 의한 미국군의 행동정지 및 무제한적이고 완전한 전투정지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국제연합이 분쟁에 개입해서 정전을 제안하고, 당사국이 이것을 승낙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1956년의 수에즈 전쟁 때의 국제연합 총회 결의, 73년의 제4차 중동전쟁 때의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제적인 정전감시단(停戰監視團)이 국제연합에 의해 파견되는 경우가 많다.²⁶⁾

따라서 한국 휴전협정은 전투행위의 중단측면에서는 유엔 개입하 쌍방의 합의에 의거 전투가 중단되고 국제적인 정전감시단이 파견된 '정전'이지만, 전쟁중지의 측면에서는 군의 최고급사령관간에 체결된 '조약'으로써 비준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휴전협정'이라 정립할 수 있다. 따라서 '정전협정'이란 용어는 유엔측과 조·중측 간에 체결된 협정 문서에 대한 고유명사이다. 그

26) 『세계대백과사전』 26권, (서울 : 도서출판한교, 1988), p.39.

러므로 한국전쟁을 중지한 휴전자체를 뜻하는 일반 명사로 쓸 경우는 ‘휴전협정’이란 용어를 사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아래 도표는 휴전과 정전의 차이점 그리고 그에 상응되는 한국 휴전협정의 성격을 도표로 규명한 것이다.

<표 2-1> 휴전과 정전의 비교 및 한국 휴전협정의 성격분석

구 분	휴 전		정 전		비 고
	일반휴전	부분휴전	유엔조치하	고전적	
한문의미	休戰	休戰	停戰	停戰/停火	
영어의미	General Armistice / Truce	Partial Armistice/ Truce	Truce/ Armistice	Suspensions Of hostilities/ Cease fire	Armistice는 휴전에, Truce는 정전에 더 가깝다.
국어사전	교전국이 서로 합의하여 전쟁을 얼마 동안 멈추는 일		교전중에 있는 쌍방이 합의에 따라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하는 일		
차이점	체결권자: 군총사령관 비준: 필요	체결권자: 군현지사령관 비준: 불요	체결권자: 군총사령관 유엔: 개입	체결권자: 현지 지휘관 유엔: 미개입	
한국휴전협정 해당여부	△ * 비준 없었음	×	○	△ * 전투 중단	○ :완전해당 △ :부분해당 × : 해당안됨

자료 : 유병화, 『국제법I』 (서울:민영사,1998) 및 『한국정전협정』 (1953.7.27)에서 발췌작성

2. 한국 휴전협정의 성격규명과 국제법적 성격

가. 이론적 성격

앞에서는 용어 연구를 통하여 한국 휴전협정에 대하여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한국 휴전협정은 조약국제법상 어떤 성격에 해당하는가를 생각해 볼 일이다. 앞에서 연구한 이론을 근거로 한국 휴전협정에 대하여 조약으로서의 성격을 규명 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 한국 휴전협정의 성격

구 분	세 분	성 격
“정식명칭”	한국문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영어문	“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
	중국어문	“聯合國軍總司令一方與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另 一方關於韓國軍事停戰的協定”
휴전종류		일반휴전(general armistice)
조약의 명칭		협정(協定 : Agreement)
조약의 형식	당사자	유엔을 일방으로 하고 북한 및 중공을 타방으로한 국제기구와 국가간 체결된조약
	체결권자	협정의 체결권자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하고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원문대로)을 다른 일방”으로 한 군의 최고급 사령관간 체결된 조약.
조약의 분류	형식적	약식조약
	실질적	계약조약, 특별조약
당사자수에 따른 분류	서명자수	다자조약(3인)
	관련국수	다자조약(19국)

자료 및 출처 : ‘한국정전협정’ 한국어, 영어, 중국어사본(1953.7.27) 및
유병화, 『국제법 I』 (서울: 민영사, 1998)에서 발췌 작성

따라서 한국휴전협정은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그 성격을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식 명칭은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조약 국제법의 일종인 ‘협정’(Agreement)의 하나이며

둘째, 조약의 형식은 당사자 측면에서는 국가와 국제기구간 체결된 조약인 반면, 체결권자 측면에서는 전쟁중 교전국간 전쟁을 정지하기 위한 쌍방 최고급 사령관간에 체결한 ‘일반적 휴전협정’이다.

셋째, 형식적으로는 관계국가 및 관계기구의 비준없이 체결된 ‘약식조약’이며, 실질적으로는 적대 쌍방간 적대행위를 정지시킨 ‘계약 조약’이기도 하다.

넷째, 당사자수 측면에서 볼 때 한국휴전협정은 3인이 서명하고, 19개국이 참여한 ‘다자조약’으로 규명 할 수 있겠다.

나. 한국전쟁의 국제법적 성격

1) 법적성격

전쟁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가이며, 경우에 따라 교전단체도 전쟁의 주체로 된다.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조직이 전쟁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의견의 대립이 있어왔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을 개시해 올 당시의 한국전쟁은 대한민국 · 북한정권 · 어느 일방만을 승인한 제3국 그리고 국제연합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반도(叛徒)단체간의 내란이지만, 대한민국과 북한정권을 모두 국가로 승인한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내란이 아닌 전쟁이다.²⁷⁾

동년 6월 25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당국에 대해 38선까지의 철군과 적대행위의 정지를 요구하는 결의²⁸⁾를 채택한바, 동 결의에 의해 북

27) 박형일, “평화협정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한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전략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7), p.17.

2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전쟁 발발 초기 “적대행위 중지에 관한 결의”(1950.6.25)에서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의 법적 성격을 국제연합 헌장 제39조에 따라 평화의 파괴(breach of the peace)라고 결정하고 적대행위의 즉각적중지를 북한 당국에게 요청하였다.

한정권은 국제연합에 의해 교전단체²⁹⁾로 승인된 것이다. 따라서 상기 결의 이후에 있어서 한국전쟁은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내란이 아닌 전쟁이었다.

1950년 7월 7일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정권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적 공격은 평화의 파괴임을 결의하고, 통합사령부를 설치할 것과 그 사령관을 미국이 임명하도록 요청하고 국제 연합기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를 채택했는데, 동(同) 결의에 의해 국제연합사령부가 설치되고, 국제연합기가 사용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전쟁상의 지위는 국제연합의 이름속에 묻히고 말았다.

특히 동년 7월 15일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국제연합군사령관에게 이양됨으로써 그 당시 한국과 북한간의 관계는 국제연합과 ‘평화의 파괴자’와의 관계로 변질되고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직접적인 적대관계에서 일보 후퇴되었다. 상기 결의 이후 한국전쟁은 대한민국, 국제연합, 국제연합의 강제조치를 긍정하는 제3국의 입장에서 볼 때 국제연합과 교전단체인 북한정권간의 적대행위이며, 북한정권과 국제연합의 강제조치를 부인하는 제3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정권을 일방으로 하고 대한민국 및 참전 16개 국가를 다른 일방으로 하는 전쟁으로 된다.³⁰⁾

그러나 우리정부는 안타깝게도 북한정권에 의한 남침을 받고서 선전포고를 한 바 없으며, 그 후에도 전쟁상태에 있다는 선언을 한 바 없다. 그러다 대법원은 1957년 1월 1일 강문봉 중장사건³¹⁾의 재판관할권을 재정함에 있어

29) 가장 일반적인 국제법의 주체는 국가이다. 그러나 국가는 아니나 국가에 준하는 국제법의 주체로 교전단체(belligerency)가 있다. 교전단체는 전쟁의 주체로 인정된 반도(insurgency)의 단체이며, 이는 일시적,잠정적 국제법의 주체이다. 한 국가 내에 혁명이나 독립운동이 발발하여 반도가 정통정부 또는 본국과 무력투쟁을 한다면, 이 무력투쟁은 전쟁이 아니라 내란에 불과하다. 그러나 반도가 본국 정부의 통치권을 배제하고 일정한 지역을 사실상 지배하여 본국 정부와 무력투쟁을 할 경우 이는 제3국 또는 본국 정부로부터 교전단체로 승인을 받게된다. 교전단체는 국제법상 전쟁의 주체이며, 일시적,지방적 국제법의 주체이고, 그 정부는 ‘지방적 사실상의 정부’(de facto local government)인 것이다. 요컨대, 국내법상 내란의 주체인 반도단체가 전쟁의 주체로 승인을 받게되면 이는 교전단체로 되며, 이 교전단체는 국가에 준하는 국제법의 주체로 된다. : 김영기, “남한과 북한의 법적 기본관계와 통일 전후의 사법적용에 관한연구”, 박사학위 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2001), pp.10-11. 참조

30) 박형일, 전제논문, p.18.

31) 1956년 1월 30일 김창룡(金昌龍) 육군특무대장 피살 사건관련, 동년 2월 27일 김창룡 저격범 허태영(許泰榮) 대령등이 구속된이후 그와 관련 동년 11월 22일 추

서 당시의 휴전기간을 전시라고 판시하고 이 사건의 관할권이 군법회의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즉 한국전쟁이 전쟁일 뿐 아니라 휴전으로 전쟁이 종료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전쟁은 1950년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북한 정권이 교전단체로 승인되었다는 점과 상기 대법원판례 및 전투수행에 있어 전쟁법이 적용되었음을 들어 전쟁이라고 본다. 따라서 한국전쟁을 칭하는데 있어 ‘한국동란’이라는 용어가 아닌 ‘한국전쟁’으로 규정되었다.³²⁾

2) 한국 휴전협정 법적당사자 및 체결권한자 성격

가) 법적 당사자

국제법 이론에 의하면 조약 체결과정에 있어서 조약 당사자와 조약 체결권자는 구별되고 있다. 조약의 당사자가 되려면 법률행위를 자기 명의로 할 수 있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격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의 보조기관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능력이 없다. 안전보장이사회나 총회도 그 기능의 중요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유엔의 기관에 불과하고 이러한 법인격을 갖고 있지 못하다. 유엔만이 법인격체인 것이다. 따라서 유엔 산하에 있는 모든기관의 법률행위도 모두 유일한 법인격체인 유엔에 귀속된다. 그러므로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바로 유엔 자신이다. 그리고 타방 당사자는 북한과 중국이다.

조약 체결권자라고 하는 것은 조약당사자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조약 체결의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그러므로 유엔군사령부와 휴전협정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법상 유엔군사령부의 최고 사령관은 휴전협정의 조약당사자인 유엔을 대표하여 휴전협정을 교섭하고 조인한 조약 체결권자이다.³³⁾

대한민국의 휴전협정 당사자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남·북

가로 강문봉 중장 등이 구속되어 군법회의에 회부된 사건.

32) 상계논문, p.19.

33) 안광찬, “헌법상 군사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2), p.89.

간의 관계를 공식화한 휴전협정의 체결경위와 그 근거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유엔군사령관이 휴전협정을 체결할 권한은 1950년 7. 7일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이다.³⁴⁾ 그리고 대한민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작전지휘권 이양공한’에 의해 휴전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작전지휘권속에 포함되어 이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유엔군사령부 설치결의 및 유엔군사령관의 ‘작전지휘권 이양공한’에 의해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에 있어서 남·북간의 관계는 유엔군과 북한 정권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 휴전협정의 법적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대한민국에 대해 휴전협정의 효력은 직접적으로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당사자인 유엔의 휴전협정 시행기관인 유엔군 사령관의 작전 지휘를 통해 간접적으로 휴전협정의 효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³⁵⁾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한국전쟁당시 주체적인 교전단체 이었으면서도 휴전협정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에 실패하였던 것에 기인한다.³⁶⁾

나) 체결권한자

한국 휴전협정은 유엔군 총사령관 미육군 대장 클라크(Mark W. Clark)를 일방으로 하고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및 중국인민 지원군 사령관 팡덕회를 타방으로 하여 서명되었다.³⁷⁾ 따라서 ‘한국정전협정’의 일방의 체결권자인 유엔군사령관은 어떤 권한으로 조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살펴보자.

모든 조약의 체결절차는 국내법에 의해 규정되며 국제기구의 그것은 국제기구의 기본법에 의해 결정된다. 유엔은 국제법상 법인격자로서 그의 기능을 위해 조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다. 즉, 유엔헌장 제104조는 유엔의 법인격을

34) L. M. Goodrich, *Korea : A Study of United States Policy in the United Nations* (New York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56), pp.183-184.

35) 안광찬, 전계논문, p.90.

36) 김경하, “한국전쟁의 전개과정과 휴전협정에 관한연구”, 석사학위 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1997), p.140.

37) 한국 ‘정전협정’ 한국어사본, p.27.

명시하고 있으며 1946년 12월 조약의 등록에 관한 총회의 결의 제4조 제1항에서 유엔의 조약 체결능력이 확인되었다. 유엔의 모든 주요기관은 유엔의 과업에 관한 특수 분야에서 유엔을 대신하여 조약을 체결할 권능을 갖는다.³⁸⁾

1950년 7월 7일의 유엔결의에 의거 설립된 유엔군사령부는 국제연합의 주요기관인 안전보장이사회의 보조기관이며, 또 동 결의에 의거 동사령부의 기관 담당자인 유엔군총사령관의 임명이 미국에 위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유엔의 대리인으로서 유엔군사령관을 임명한 것이다. 따라서 유엔군사령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보조기관으로 국제법상 인격이 없으므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의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의 서명은 유엔군사령부를 대리해서가 아니고 유엔을 대리한 유엔 사무총장의 대리인으로서 서명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³⁹⁾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여 군사령관에게도 전쟁중 적대행위중지를 위한 조약 체결권이 부여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클라크 장군의 휴전협정 서명은 유엔 사무총장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군 총사령관이라는 직접 기관으로 행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단지 국제법에 의해 직접 부여되는 군사령관의 조약 체결권은 군사적 사항에 한정되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에 관한 것은 그의 권한 외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휴전협정에는 정치적 사항의 규정이 없으며 이는 차후의 고위의 수준에서 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오직 군사적 성질의 것만을 해결한 것이다.⁴⁰⁾

또한 한국휴전은 소위 일반휴전이며⁴¹⁾ 일반휴전은 군총사령관만이 체결할 권한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유엔군사령관은 유엔으로부터 특별 수권(受權)없이도 군총사령관으로써 휴전협정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38) R. Higgins,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Through the Politic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London : Oxford Univ Press, 1966), p.250.

39) 안광찬, 전계논문, p.87.

40) D. W Bowett, *United Nations Forces*, (London : Stevens, 1964), p.52.

41) Great Britain, The War Office, *The Law of War on Land*, Part III (London : H.M.S.O, 1958), p.126.

다) 한국 휴전협정의 현상(現狀)

국제법상 전쟁의 종료 방법에는 대체적으로 세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통상적으로 전쟁의 종료는 교전국간에 체결되는 강화조약으로 이루어진다. 둘째는, 일방 교전국이 타방 교전국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다. 셋째는, 교전국 상호간에 공식적 합의 없이 사실상의 교전행위가 중지되어 전쟁이 종료되는 경우이다.⁴²⁾

종전은 교전국의 상호관계를 평시 국제법관계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진다.⁴³⁾ 강화조약 즉, 평화조약, 평화협정 등을 통한 전쟁종결이 가장 대표적이며 고전적이며 대표적인 방식이다. 휴전협정으로 실질적인 군사적인 적대행위는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평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전쟁관계에 놓여있다. 1907년 육전법규 제36조는 교전 당사국간에 상호 합의에 의한 군사행위의 중지를 휴전으로 정의하면서 휴전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교전 당사국들은 언제라도 군사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⁴⁾

한국휴전협정은 휴전기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휴전협정의 폐기 조치와 함께 군사적 적대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국제법 위반행위로 규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남·북한과 중국이 한국전쟁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모두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고 유엔 헌장상 무력사용이나 무력 사용의 위협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휴전협정의 폐기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전쟁 교전당사국의 어느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유엔헌장의 위반행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⁴⁵⁾

그렇다면, 현재의 휴전 협정 하에서 군사적 적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유엔

42) 김은수,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1), p.15.

43) 김정건, 「국제법」, (서울: 박영사, 1998), p.854.

44) 김은수, 전제논문, p.15.

45) 유엔헌장 제2조는 모든 유엔회원국은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무력사용이나 무력사용위협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헌장 제41조와 42조는 평화의 파괴나 무력공격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경제적, 군사적 제재행위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개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한국전쟁당시 채택되었던 결의를 근거로 유엔이 다시 개입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민경길은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채택 되었던 유엔의 결의가 아직도 유효하므로 새로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없어도 집단적 제제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해석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휴전협정에 대한 일방적 폐기가 가능한 하지만 새로운 적대행위가 발생하면 새로운 침략 또는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 는 입장이다.⁴⁶⁾

왜냐면 한국전쟁 당시와는 달리 현재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위치를 차지하고있어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무력 침략 행위가 발생할 경우 중국의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성격의 유엔이 한반도 지역에 파견 되는 것은 국제정치적 현실이나, 유엔 현장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반도에서 새로운 무력 침략행위를 격퇴하기 위하여 미국이 기존의 주한 유엔군 사령부에 자국의 병력을 보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유엔군의 군사적 목표는 북진이 아니라 원상 복구에 국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⁴⁷⁾

그렇다면 1994년이래 북한이 휴전협정의 무효를 선언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 휴전협정은 과연 유효한 것인가?

휴전협정과 휴전감시기구를 무효화하려는 북한의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휴전협정은 유효하다는 것이 한국과 미국 및 중국정부의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1991년 12월 13일의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서 현 휴전상태를 남북한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現 軍事停戰協定)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한간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휴전협정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⁴⁸⁾ 미국과 중국정부도 한반도에 평화체제

46) 민경길, “한국정전협정의 이행실태”, 『서울대학교 법학』 제41권 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9), p.276.

47) 김은수, 전개논문, p.17.

48)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는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구축되기까지는 휴전협정이 준수되어야 하며 한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당사자간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⁴⁹⁾

학문적 측면에서도 휴전협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국제법 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69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어느 일방이 조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타방이 해당조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이 휴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할 만큼 유엔사측의 휴전협정 위반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휴전협정 폐기행위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1994년 4월 28일자 북한 외교부대변인의 성명⁵⁰⁾은 휴전협정의 종료를 의도한 법률적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단순히 평화보장 체계수립을 위한 협상을 미국에 제의한 정치적·정책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셋째로, 정전협정 제61항상 정전협정에 대한 증보와 수정은 반드시 쌍방 사령관들의 합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유엔군 사령관과 조·중측 사령관간의 상호합의가 없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⁵¹⁾

휴전협정이 북한의 표면적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유효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본다면, 앞에서 살펴본 국제법상 전쟁종료 방식중 하나인 적대행위의 중지에 의한 종결이 한국전쟁에도 적용되어 별도의 평화협정 체결 없이도 현재의 휴전협정만으로 평화상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⁵²⁾

49) 통일원, 『‘96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 관련 자료집』 (1996.12), pp.16-19.

50) 발표문 요지는 ①우리측은 군정위로부터 군정위 위원, 비서장, 부비서장 및 기타 참모장교들을 철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앞으로 유엔사측 군정위는 인정하지 않을 것임. ②우리측은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을 철수 시킬 것임. 이유는 군정위가 없는 상황에서 중감위가 존재할 수없기 때문임. ③차후 최고사령부로부터 위임받은 인원이 군정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측 군정위 요원을 대신해서 미군과 판문점에서 접촉을 가질 것임, 동 접촉이 성사되면 현 군정위를 대체하는 항구적인 평화체제 문제들이 토의될 것임.

51) 제성호, “한국정전협정의 이행실태,” 『서울대학교 법학』 제41권 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9.), pp.267-269.

52) 제성호, “한국 정전협정의 법적 재검토”, 『국제법학회논총』 87호, (대한 국제법학회, 2000.6), p.227.

국제법학자 줄리우스 스톤(Julius Stone)은, ①전전선(全戰線)에 걸쳐서 모든 전투병력들 간에 적대행위의 중지를 규정하는 일반적인 휴전협정(general armistice agreement)이 휴전 성립 후 상당기간 존속하고, ②교전 당사자간에 무력 적대행위를 포기한다는 의사가 존재하며, ③효과적인 전쟁 재발방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전쟁상태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 북한이 무력 도발행위를 포기하였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남북한이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비무장지대를 군사화(軍事化)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휴전협정상의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가 북한의 거부로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한국휴전협정의 체결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상의 전쟁종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⁵³⁾

53) 김은수, 전제논문, p.20.

제3장 한국 휴전협정과 베트남 휴전협정의 비교 분석

제1절 한국 휴전협정(1953)의 체결과정과 이행경과

1. 체결배경 및 경위

가. 체결 배경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임박하였음을 미리 내다본 미국·영국·소련 등 연합국측 3개국의 수뇌들은 1945년 2월 4~11일 알타에서 회합하고 전후처리에 관한 협정을 맺었는데, 이 회담에서 소련의 대일참전이 약속되었다.

그리고 이 협정에서는 한국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었다. ①적절한 시기에 자주독립국이 될 것을 협약한 카이로선언을 재확인하고, ②어느 단일국가에 의한 한국의 군사점령은 심한 정치적 반응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을 구분된 지역이 아니라 단일체(單一體)로 취급하여 중앙집권제 행정원칙에 입각한 군정청을 조직할 것 등의 내용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그후 연합군 참모장 공동회의에서 전후의 한반도는 미군과 소련군이 분담하여 점령하기로 약정되었다.⁵⁴⁾

1945년 8월 10일 일본이 비로소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여 무조건 항복할 뜻을 밝히자, 미국 국방성은 한반도는 38도선을 기준으로 이남은 미군이, 이북은 소련군이 주한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해제 문제를 담당할 것을 제의하여 미국 정부안으로 확정 하였다. 그후 소련과 합의되어 미·소 양군(兩軍)의 군사분계선으로서의 38선이 책정되었고, 한반도에는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쪽에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탄생하였고, 북쪽에는 소련의 영향아래 공산정권이 수립되었다.

54) 차기문, “한반도 정전체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2003), pp.21-27.

그후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 이끄는 북한군이 남침을 도발하여 한국 전쟁이 돌발되었다. 그러나 UN의 신속한 결의에 따라 맥아더장군 지휘하의 UN군이 참전함으로써 전황을 역전시켜 압록강까지 진군하였으나 중국군의 개입으로 다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다가 마침내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나. 경위

북한의 남침도발에 의하여 발발된 한국전쟁에 대하여, 유엔은 1950년 6월 27일 안전보장이사회를 개최하여 북한의 남침을 유엔헌장을 위배한 ‘평화의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적대행위의 중지와 38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명령하였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사적 제재를 가할 것임을 결의하였으나, 북한이 유엔의 결의를 무시하고 공격행위를 계속함에 따라 유엔은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의 군대를 유엔군으로 구성, 파견하고,⁵⁵⁾ 유엔군은 한국군과 연합하여 동년 10월말 압록강까지 진격하였다.⁵⁶⁾

1950년 10월말 이후 1백만이 넘는 중공군이 개입하기 시작함으로써 전쟁이 확대되고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면서 유엔 회원국간에 정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특히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 맥아더 장군의 군사적 모험주의⁵⁷⁾를 억제시키고 휴전을 성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유엔이 휴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 한 것은 1950년 12월12일 아시아,아랍권 13개국⁵⁸⁾이 한국에서 만족할 만한 정화안(停火案)을 마련하기 위해서 ‘3인 정화 위원회’(Three man Group on Cease Fire)의 설치⁵⁹⁾ 와 평화회의 개최

55)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88호.

56) 국방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제1권, (서울 : 국방부, 1986), p.13.

57) 1950년 12월 30일 당시 유엔군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은 중공에 대한 강력한 응징조치로 중국본토에 대한 군사작전을 주장하였다.

58) 13개국은 버마,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아프카니스탄, 예멘, 이라크, 이란, 인도네시아, 인도, 이집트, 파키스탄, 필리핀 임.

59) 3인 정화위원회 설치는 설치안 제출 다음날 설치되어, 1951년 1월 13일 한국전쟁의 정전을 위한 신청전 5개항 즉, ①즉시정전, ②영구평화를 위한 휴전중의 행동 ③적당한 단계에 외국 군대의 철퇴 ④휴전중 유엔의 한국행정감시 ⑤극동문제 해결을 위한 미·영·중·소의 회합등을 가결 하였으나 소련과 중공의 반대로 한국전쟁 후 최초의 휴전협상 시도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요구등 2개의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하여 평화적인 종전을 제의한 이후이다.

한국전쟁 발발 1주년을 목전에 둔 1951년 6월 23일, 소련의 유엔대표 말리크(Yakov A. Malik)는 유엔 방송에서 ‘평화의 가치’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첫단계로서 정전과 38선으로 부터의 군대의 상호철수를 규정하는 휴전회담을 쌍방이 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으며,⁶⁰⁾ 이는 소련주재 미국대사를 통하여 방송내용이 소련의 공식 입장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서 미국무성은 한국전의 평화적 해결에 미국은 항상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천명하였다.

결국 중공이 1951년 6월 25일, 그리고 북한이 6월 27일 소련의 입장에 지지를 표명하였고, 영국과 프랑스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유엔측이 추구해오던 휴전회의의 여건이 조성되었다.⁶¹⁾

1951년 7월 8일 예비회담을 거쳐 본 회담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7월 10일에 개성에서 개최되었다.⁶²⁾ 이로부터 만 2년간에 걸쳐 계속된 휴전회담은 지루하고도 험난한 과정을 겪었다.

개회 서두에 쌍방은 의사일정을 교환하였고, 의제에 관련해서 유엔측은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는 토의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문제에 관계없는 어떠한 군사적인 사항도 토의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 함으로써 휴전회담은 오로지 한국전쟁을 종결 시키기 위한 협상에만 국한 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밝혔다.⁶³⁾

회담초기에 공산측은 “휴전 성립과 동시에 38선을 경계로 남북 각 10km의 비무장지대의 설정과 포로 교환을 위한 협의 그리고 한국내의 전(全) 외국군대를 단시일 안에 철수 시킬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유엔군측은 한국에서 외국군철수는 군사력 균형을 잃게되어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 될 것을 우려하여 공산측 제의를 거부함에 따라, 회담진전이 없다가 51년 7월25일 제9

60) W .H. Vatcher, *Panmunjum* (Westport : Greenwood, 1958), p.276.

61) L.M. Goodrich, *op.cit*, p.183.

62) Myung Ki Kim, *The Korean War and International Law* (Claremont : Paige Press, 1991), p.153.

63) 김양명, 『한국전쟁사』 (서울 : 일신사,1988), p.453.

차 회의에서 공산측이 회의 의제 5개항⁶⁴⁾을 제시함으로써 7월 26일 쌍방은 '5개항의 의사일정'에 합의하였다.

의제를 합의한 쌍방은 5개항의 2항인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의 설정에 대하여 토의하기 시작하였으며 유엔군측의 현전선 휴전안과 공산군측의 38도선 휴전안이 대립되어 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유엔측은 제2항의 토의를 유보하고 제3항인 정전감시 및 기능 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공산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쌍방은 2항 군사분계선 문제를 합동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임키로 합의하였다.⁶⁵⁾

합동분과위원회에서도 쌍방이 대립되는 가운데 회담장소를 개성에서 판문점⁶⁶⁾ 지점으로 옮겨 회담을 계속하던 중 만 5개월 만에 유엔측안인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각 2km씩, 폭 4km의 비무장지대의 설치와 잠정적 군사분계선 설정에 합의하였다.⁶⁷⁾

제3항의 정전 감시방법 및 기능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유엔측은 휴전협정 조인시부터 24시간내 전투행위 중지와 동일수(同一數)로 된 정전 합동감시기구의 설치등 7개항의 원칙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공산측은 휴전조인과 동시 적대행위의 중지, 3일이내에 비무장지대로부터 철수등 5개항을 제시하였다. 상기안 중에서 공산측은 특히 군대의 증강금지 항목과 합동감시단의 자유통행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여 회담이 난항을 거듭하였으며, 정전협정 발효 24시간이내 적대행위 중지와 쌍방부대의 72시간이내 철수, 그리고 5일 이내 상대방 해안에서 철수 등 3개 항목이 합의된 이후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 52년 5월까지 정전감시 및 기능 문제중 비행장 건설문제와 한강공동 관리문제는 유엔측의 양보로 해결되었고, 기타 영해문제, 병력 교대안, 중립국 감시단의 지명, 합동감시반의 출입항 문제등 4개항은 쌍방간의 절충안이 채택되었다.⁶⁸⁾

64) 5개항은 ①의제의 선택, ②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설정, ③휴전감시방법 및 기능문제, ④포로교환 문제, ⑤쌍방 각국 정부에 대한 건의를 말함.

65) 국방정보본부, 전게서, p.19.

66) 여기서 말하는 판문점은 현재의 공동경비구역(JSA)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경비구역 서북방 약 800m지점 북한지역의 '널문리'지역을 말함

67)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서울 : 국방부, 1989), p.135.

1952년 2월 제33차 본회담에서는 의제5항인 쌍방 각국 정부에 관한 권고 사항을 토의하였다. 이 회담에서 공산측 수석대표 남일은 전외국(全外國) 군대의 철수문제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토의하기 위하여 휴전후 3개월 이내에 정치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군측 조이 제독은 문제를 한국문제에 국한 할 것과 한국대표의 참가를 조건부로 정치회담 개최에 동의함으로써 의제 5항은 합의되었다.⁶⁹⁾

휴전협상 기간 중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었던 것은 포로교환 문제였다. 회담이 시작될 때 유엔측은 약 13만의 포로를 수용하고 있었다. 포로 교환문제의 쟁점은 송환방법으로서 유엔측은 자유송환을 주장한 반면 공산측은 강제송환을 주장하였다. 이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수차례의 비밀회담이 있었지만 공산측이 오히려 감시문제와 연계해 전포로(全捕虜)의 송환을 주장함에 따라 유엔측은 회담의 지체를 염려하여 중립국에 의한 포로감시와 유엔군의 북한 연안 도서 및 연안으로부터 철수할 것을 수락함으로써 또 하나의 양보를 했다.⁷⁰⁾

그렇지만 공산측의 제안은 바뀌지 않았으며, 회담이 정체되고 있는 동안 그들은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수용소장 포드 준장을 계획적으로 납치해 휴전회담에서 유엔측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한편, 유엔군의 전투력을 폭동진압과 포로감시에 분산시키려고 획책하였다.⁷¹⁾ 이를 계기로 회담은 다시 무기휴회(無期休會)로 들어가게 되었다.

52년 10월 제7회 유엔총회에서 휴전협정과 관련하여 미국의 자유송환원칙과 소련의 강제송환원칙이 대립되었고, 이에 따라 인도는 타협안으로 포로송환의 강제력을 불허하고 귀국불원(歸國不願) 포로들은 정치회담에 일임하자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 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나 중국과 북한은 “포로 자유송환이 국제법과 제네바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

68) 국방정보본부, 전게서, pp.21-22.

69) 상게서, p.23.

70) 이 문제는 후일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는바 특히 서해상에서는 서해 5개도서와 관련하여 남·북한간에 북방한계선(NLL: nothren limit line)을 사이에두고 2차에걸친 해상교전이 일어나 양측모두 함정 및 인원손실이 발생함.

71) 김양명, 전게서, p.464.

였다.⁷²⁾

한국 문제가 유엔총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안 53년 2월 유엔군사령관 크라크 대장은 부상병 포로부터 우선 교환하자는 서한을 공산측에 발송하였다. 한편 소련에서는 동년 3월 스탈린 사망으로 인하여 평화공세를 취하게 되었고, 이는 한동안 중단되었던 휴전교섭을 재개케 하였다. 이에 공산측은 포로에 관한 전반적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판문점 회담을 재개하자는 의사를 제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1953년 4월, 부상병 포로 교환에 대한 문제에 쌍방 의견이 접근되어 5월말까지 11차에 걸쳐 부상병 포로가 송환되었다.⁷³⁾

한편, 유엔군에 의해 송환불원(送還不願) 포로 석방 주장이 철회됨으로써 53년 6월 8일 포로교환 협상이 합의되었으나, 한국측에서는 유엔측의 유화적(有和的)인 태도를 들어 한국군대표의 휴전회담 참석을 거부하는 동시에 휴전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제네바 협정과 인도주의 정신을 들어 반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하였다.⁷⁴⁾

당시 공산측은 한국정부의 일방적인 공산포로 석방으로 휴전조인식장 건축작업을 중지하고 최악의 경우 전면전을 일으키겠다는 시위를 했으나, 7월 10일 돌연 회담 재개에 성의를 보임으로써 사태는 호전되어 휴전을 위한 마무리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51년 7월 10일부터 개시되었던 휴전회담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한 끝에 회담을 개최한 지 2년 17일만인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판문점⁷⁵⁾에서 열린 제159차 본회담에서 협정조인이

72) 국방정보본부, (1986), p.24.

73) 당시 상호교환 부상병 포로는 유엔측 684명, 공산측 6,670명으로 공산측이 부상 포로 송환에 동의한 것은 거의 10:1에 가까운 포로 교환에 도 있었지만, 위장평화 공세를 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것으로 추정된다

74) 이는 유엔측의 반발을 유발시키고 유엔과 한국의 공모라는 공산측의 정치적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75) 회담조인이 거행된 장소는 지금의 판문점(JSA : 공동경비구역)이 아니다. 정확한 장소는 현재는 북한지역 비무장지대내에 위치한 곳으로 한국전쟁 직전 경기도 장단군 진서면 선적리와 경기도 개풍군 봉동면 침송리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농촌마을 '널문리'이었다. 본래 최초의 휴전회담은 개성 북쪽에 위치한 '내봉장'에서 개최되었었는데, 회담장의 중립성 문제로 인하여, 새로운 회담장으로 널문리 지역이 공식 합의되어 널문리의 점막(店幕) 앞 콩밭에 새로운 회담장이 북측에 의해 지

실시되었다.⁷⁶⁾

2. 협정의 내용

가. 내용

‘한국정전협정’은 모두 2권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제1권은 전문, 본문(5개 조 63항), 부록으로 구성되어있고, 제2권은 지도로 구성 되어있다.⁷⁷⁾ 본문의 주요내용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전쟁포로의 처리, 쌍방관계 정부들에 건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는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설정 규정으로 1개의 군사분계선(MDL : military demarcation line)을 중심으로 폭 4Km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고 있다. 군사분계선은 육상에만 설정되어 있으며, 해상에는 군사분계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⁷⁸⁾이나 군사 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비무장지대의 출입은 요구하는 지역의 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군사분계선의 통과는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⁷⁹⁾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이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어졌으나, 널문리를 중국측의 한자로 표기할 수가 없어 회담장소인 널문리와 회담장 부근에 있던 점막을 합쳐 ‘판문점(板門店)’으로 표기 하였다.

76) L.M. Goodrich, *op.cit*, pp.195-196.

77) 협정 제2권 “지도”는 ①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의 북경계선과 남경계선 지도 9매, ②한강하구 구역 지도 1매, ③서해 연해섬(5도) 지도 1매, ④중립국 시찰소조 교통선 지도 10매, ⑤중립국 시찰소조 주재출입 지도 10매 로서 총 22매의 지도로 구성 되어있음.

78) 사민(私民: civilian)은 협정 내용에서 사용한 용어로서 군인에 대칭되는 민간인을 지칭 하는 북한측 용어이다.

79) 이는 협정 영문본에 ‘civil administration and relief’로 표기되어 있는데, 1953년 7월 30일 군정위 제3차 본회의시에 쌍방간 합의하여 “비무장지대내에서 군사경찰을 민사경찰로서 직무를 수행케 한다”고 하였는바, 즉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현재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정경찰’을 말한다. 협정에는 일방에 가용한 인원을 비무장지대에 1,000 한강하구에 24명 도합, 1,024명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조는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에 관한 내용들로서,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72시간 내에 그들의 일체의 군사역량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하는 것을 비롯하여 협정 효력발생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후방과 연해도서 및 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역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또한, 한국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군사 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⁸⁰⁾와 중립국감독위원회⁸¹⁾의 구성과 권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의 전반적 임무는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본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제3조는 전쟁 포로의 처리와 송환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협정의 효력발생 후 60일 이내에 각방은 그 수용하에 전쟁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송인도(送引渡)하며, 어떠한 보복도 가하지 못한다. 또한 어떠한 포로든지 전쟁행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항민에 대해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전쟁이전 거주했던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는 내용등이다.

제4조는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사항으로, 휴전협정은 군사문제만을 해결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치회의의 소집을 권고하는

80) 군사정전위원회(MAC :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는 정전협정 제2조 제20항에 따라 유엔측군정위(UNCMAC : united nations command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대표 5명과 조중측군정위(KPA/CPV MAC : korea people's army/Chines people's volunteers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대표 5명 등 모두 10명의 대령이상의 고급장교로 구성된다. 실제로 유엔측 군사정전위원회는 한국군 소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한국군 준장1인, 미군 준장1인, 영국군 준장1인과 기타 참전국 대표1인(현재는 유엔사 활동국가중 현역 대령을 파견 활동중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프랑스, 필리핀, 태국의 7개국의 참전국을 대표들이 6개월씩 그임무를 돌아가며 수행하고 있음) 등 5인으로 구성된다. 이에 비해 공산측 군사정전위원회는 북한측 상장(한국의 소장에 해당)을 수석대표로 하고, 북한소장(한국의 준장에 해당)2인, 중국군 소장1인, 북한측 대좌 1인으로 구성하여 활동 하였으나 한국군 장성의 군정위 수석대표 임명이후 이를 해체하고 소위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 하여 대표는 상장(한국군의 중장급에 해당)으로 부대표는 대좌(한국군의 대령에 해당)로 임명해오고 있다.

81)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는 본래 국제연합국측 2개국(스위스, 스웨덴)과 공산측 2개국(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총 4개국으로 구성되었으나 북측의 휴전협정 무실화 책동으로 인해 체코는 해체되었고 폴란드는 북측에서 추방된 이후 현재는 본국에(폴란드) 그 기구를 유지하고 분기에 한번씩 유엔측 중감위 국가와 합류 활동하고 있다.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나. 문제점

무엇보다도 한국 휴전협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휴전협정당시에 휴전협정에 대한 한국정부의 역할이었다. 한국은 휴전협정체결 직전에 미국으로부터 대가를 얻어내고 반공포로를 석방하는데 성공하였으나, 결코 한국이 휴전협정체결에 주도적 입장에 선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한국의 휴전회담에서의 소외와 휴전반대는 휴전협정에 한국이 서명하지 못하여, 휴전협정의 당사자 문제가 제기되는 근원이 되었다.⁸²⁾

따라서 지금까지, 휴전협정에 관련된 제반 현안 문제들을 이행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한국은 엄연한 국제법적 조약 체결 당사자였으면서도 협정의 일방 체결 당사자인 북한에 비하여 한국의 입장은 항상 불리하고도 수세적인 입장에 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정치회담의 실패로서, 제네바 정치회담의 실패는 비록 휴전협정의 체결이후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군사적 문제이외에 남북한 관계를 정립할 아무런 규정도 없게 되었다. 휴전협정은 비록 적대행위를 정지시켰으나 최종적인 정치적 해결의 미결상태는 그대로 남아있다.⁸³⁾

다음으로는 해상경계선 문제이다. 협정당시 유엔군측은 해상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협정체결에 급급한 나머지 서해상에서 5개도서만의 통제를 제외하고 해상에서의 남북간 분계선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2차례에 걸친 남북간 해상교전등 인명과 장비의 손실은 물론 극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사건들이 일어나 현재까지도 많은 긴장과 대립을 유발하고 있다.

82) 손희두, “한국휴전협정에 관한 연구: 당사자문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성남:정신문화연구원, 1985), p.22.

83) 협정규정 제4조 정치회의 소집 규정에 의거 국제연합 총회는 1953년 8월 28일 정치회담의 개최를 환영하는 결의를 채택했으며, 이 결의에 의거 1954년 2월 18일 미, 영, 불, 소 4대국에 의한 베를린 외상회담에서 4월 26일부터 제네바에 정치회담을 개최할 것과 그 당사자를 국제연합측은 대한민국과 16개 참전국, 공산측은 북한, 중국, 소련으로 할 것을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1954년 4월 28일부터 제네바에서 정치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양측의 의견 대립으로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하고 회담은 끝나고 말았다.

다음은 실향민의 문제이다. 휴전협정의 규정에 따라 1954년 3월 1일에 실향민에 대해 귀환을 실시했으나 실제 귀환한 사람은 극소수였다. 이러한 사실은 공산측이 실향 사민들에게 귀향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음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고, 귀향을 원하는 사민들에게 자유의사의 표시를 보장하지 않는 등 휴전협정을 위반하였음을 보여준다. 실향민의 귀환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협정에 포함되었더라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많은 가족들이 지금처럼 이산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⁸⁴⁾

3. 체결당시 관련 당사국의 입장

가. 한국

북한의 침략을 당할 당시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존하여 지탱되고있는 신생약소 분단국가 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분단국가로서는 근본적으로 남·북간 대결로 인한 민족의 고통을 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여 전쟁의 참혹함을 참아내서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만이 민족이 살길이라는 신념으로 일관하였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은 초전에 비참한 패배 상태에서도 북진 통일론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막상 소련의 유엔 대사 말리크의 휴전제안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휴전은 도저히 수락할 수 없는 것이며, 유화(宥和)야말로 우리를 대전(大戰)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지 결코 평화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⁸⁵⁾

그러나 한국전쟁을 종결 지으려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는 바꿀 수는 없었다. 결국 미국의 특사 로버트슨(Robertson) 국무차관보와의 회담(1953.7.11)에서 이대통령은 휴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는 대가로 한미상호조약의 체결과 경제원조등의 사항을 보장받고 휴전성립에 동의 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한국은 휴전협정 체결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에 실패하는 누를 범하였다.⁸⁶⁾

84) 김경하, 전개논문, P.148.

85) 신복룡, “한국전쟁의 휴전”, 『한국전쟁과 휴전체제』 (서울: 집문당, 1998), p.125.

나. 미국

유엔 참전국을 이끌고 전쟁을 지휘하였던 미국은 인천상륙 작전이 성공하고 38도선을 돌파하여 북진을 계속하자 전쟁의 미래에 대하여 낙관적이었다. 그러나, 중공군이 개입하자 1.4후퇴와 서울 재탈환을 거쳐 전선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미국정부는 대책을 서두르게 되었다.

당시 미국의 입장은, ①전면공격을 통해 공산군을 섬멸하는 것이지만, 공산군의 무한한 인력과 아군측의 손실을 고려할 때 이는 불가하며, ②유엔군을 전면 철수 시키는 방안은 유엔군의 위신에 상처를 주고 우방의 신뢰를 잃기 때문에 불가하고, ③현상 유지안은 끝없는 소모전을 요구하므로 불가했으며, ④중국본토에 대한 폭격안은 소련의 참전을 유발하기 때문에 불가하고, ⑤남침의 우려가 있지만 군사분계선상의 휴전인데 이 길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⁸⁶⁾ 이중에서 다섯째 방안이 애치슨 국무장관의 결심을 얻어 미국의 정책으로 확정되었다.⁸⁸⁾

다. 중공

중공은 1951년 5월 춘계공세 이후 부분적인 작전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인력의 손실과 미국 공군의 공습으로 통신과 수송이 마비되어 극도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었다. 결국 1951년 6월의 시점에서 볼 때 미군을 섬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전선의 전반적인 상황이 계속 불리하므로 휴전은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중공은 체면을 고려하여 1950년 6월 25일 이전의 상황(38도선)을 회복하고, 중공이 바라던 유엔 가입 및 대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휴전에 대한 기본입장을 정립하게 되었다.

즉, ①한국에서 외국군대가 전면 철수하고, ②중공이 대만을 흡수하며, ③유엔에서의 모든 대표권을 중공이 갖도록 하고, ④한국의 내정은 한국인 스

86) 김은수, 전계논문, p.128.

87) "Memorandum of Conversation in Department of State by D.Rusk" (Feb.6, 1951), in FRUS (Washington,D.C.: GPO,1983), vol.VII Part 1, p.155.

88) "Memorandum by Rusk"(Feb.11,1951), *ibid.*, pp.165-166.

스로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관계국간의 협상을 통해서 모색되어야 하며, ⑤선 휴전 후 협상은 미국의 침략을 지속시킬 뿐 진정한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선 협상, 후 휴전이 바람직하다⁸⁹⁾는 입장이었다.

라. 소련

소련은 초전 단계에서는 한국전쟁의 시작을 후회하지 않았으나 유엔군이 38선을 돌파하였을 때 하나의 실수로 후회하기 시작했다. 소련은 중공을 대리로 한국전쟁에 개입시켰지만 전세가 불리하게 전개되자 세계공산주의 요새로서 자신이 위협에 봉착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2차 대전후 아직 미국과 전면전을 치를 만큼 준비가 되지 않아 소련은 1951년 6월의 전황에서라도 휴전을 할 수 있다면 받아 드릴 수 밖에 없는 처지였다.⁹⁰⁾

마침 미국 국무부의 소련 전문가 케난이 유엔 주재 소련 대사 말리크와 밀회를 통해 휴전의 암시가 있자 휴전을 공식 제의 하기에 이르렀다. 즉 케난과 밀회가 있는 직후 1951년 6월 23일 말리크는 유엔 라디오가 마련한 특집 방송에서 ‘평화의 대가’라는 프로에 출현하여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가장 첨예한 문제인 한국전쟁을 해결 하기위한 평화의 길목으로 들어서는 당사국간의 준비가 필요하다. 소련인민은 그 첫단계로써 교전상태의 중지와 정전을 위해 38도선에서 상호 철군 하므로써 교전국 사이에 대화가 시작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고 6월 25일 트루먼 대통령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이 사망할 때까지 포로문제등 휴전협상시 미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의 배후에는 소련이 있었다.

마. 북한

북한의 김일성은 1950년초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한국전쟁이 발발하면 첫 총성과 더불어 1500~2,000명의 빨치산과 20만명의 지하당원이 남한에서 봉기함으로서 미국이 개입할 겨를 없이 승전할 것이라고 미국의 개입을 걱정하던

89) 신복룡, 전개논문, pp.110-115.

90) 상계논문, pp.117-123.

스탈린을 설득하였고 스탈린은 이를 믿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미군의 참전과 더불어 자신의 승리가 무산될 것이 자명해지자 전쟁을 후회하기 시작했고 소련과 중공의 군사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휴전협상을 늦추는 것은 불리하다는 판단으로 휴전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⁹¹⁾

4. 협정의 이행 경과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통일의 기회를 놓친 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밤 10시를 기해서 전전선(全戰線)에서 일제히 총성은 멎었고, 이때부터 휴전협정에 따라 72시간 이내 당시 전선(前線)으로부터 쌍방 공히 2km씩 철수하게 되었다.

그리고 협정에서 합의한대로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정 발효후 3개월내에 한급 높은 정치회의 소집”을 시행하기 위한 예비회담이 1953년 10월 26일 판문점에서 개최되었으나, 쌍방의 의견대립으로 무기휴회로 들어갔다.⁹²⁾

이듬해인 4월 26일 제네바에서 전쟁 당사국인 한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 참전 16개국중 남아연방을 제외한 15개국과 중공, 소련등 총 19개국이 참가하여 정치회담을 개최한 바 있었지만, 쌍방의 의제와 주장이 엇갈려 비난과 반박등으로 결국 재개의 기약도 없이 1954년 6월 15일 본회담이 결렬되었고 한반도의 휴전상태는 5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기간 중 피·아 쌍방이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한 건수는 약 126만여건(1994.4월말까지 통계)⁹³⁾에 달한다. 그리고 현재까지 (2003년 12월 말 기준)

91) 양진삼, “전쟁기 중국지도부와 북한지도부 사이의 모순과 갈등”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군사편찬연구소, 2002), p.615.

9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서울: 국방부), p.344.

93) 1994년 3월 8일 북측이 군정위 위원 소환 및 월별 ‘정협 위반 통계’ 교환을 중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후, 동년 5월 이후부터 월별 정협 위반 통계를 상호 교환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기간중 상호간 통보해준 건수(북측 주장 아측 위반: 835,563건, 아측주장 북측 위반: 425,271건)는 유엔사는 북측의 정협 위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한 반면, 북측은 정치적인 선전 목적상 허위로 작성하

위기관리 차원에서 보았을 때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었던 주요 휴전협정 위반 사건을 종합해보면, 북측이 위반한 중대한 도발 사건들은 지상 103건, 해상 86건, 공중 22건등 총 211건에 달한다.⁹⁴⁾

지상 도발사건들은 비무장 지대 총격사건, 무장간첩침투 및 기습사건 등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아웅산 폭발 테러 사건등은 한반도 전쟁 재발 위기를 고조시켰던 도발 사건들이었다.

해상 도발사건들은 주로 서해도서를 중심으로한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침범사례로 인한 쌍방간 해상 교전 2회⁹⁵⁾를 비롯 무장간첩선 침투사건, 어선 납북 사건 등이 빈번하였으며 가장 긴장을 유발시킨 도발사건은 1968년 1월 23일 동해상에서 항해중이던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이었다.

공중도발사건은 1969년 4월 15일 청진 동남방 90마일 공해상에서 통상적인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미 정찰기 EC-21 격추사건을 비롯 KAL 858 폭파 사건, 민항기 납치사건등을 들 수 있다.⁹⁶⁾

이와 같은 북한의 주요 도발사건과 지금까지의 군정위의 역할을 연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1950년대

1953년 휴전 직후에는 남북쌍방이 전후 복구사업에 몰두하였고, 북한의 대남전략이 미처 수립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휴전협정의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21건의 부속합의서를 채택하는 등 휴전협정 이행을 위해서 비교적 상호 협조적이었다. 그러나 1954년 6월 15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소집된 제네바 정치협상이 결렬되면서, 군정위에서는 54년 후반기부터 주로 쌍방이 전력증강문제를 가지고 마찰을 빚기 시작하면서 상호

였기 때문에 북측이 주장하는 남한측의 정협 위반 건수는 신뢰성이 없음.

94) 합참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제6집 (서울: 합참정보본부, 2003), p.140.

95) 1회는 1999년 ‘연평해전’, 2회는 2002년도의 ‘서해 교전’을 말함

96) 황원탁, “정전협정체제의 문제점과 대책” 『한국의 정전체제유지와 평화체제 구축방향』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15.

비방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1956년 5월 31일 제 70차 본회의에서 유엔사측은 당시 남쪽에서 활동하던 중립국 감시위원회 폴란드 및 체코스로바키아 대표단이 주로 북한을 위한 첩보활동을 하는 것을 이유로 중립국 감시위원회 시찰 소조를 판문점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나. 1960년대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에서는 4.19 및 5.16혁명이 일어나고, 북한은 대남 통일전선 전술에 의하여 무장공비를 침투시키고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총격전등 대남 도발을 격화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때 중대한 북한의 도발 사건들은 1968. 1. 21 청와대 기습사건, ‘푸에블로’ 호 납치사건, 울진삼척지구 대규모 무장침투사건, 1969. 4 미군 첩보기 EC-121 격추사건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군정위 본회의 활동은 1972년 전반기까지는 연 평균 20회 정도씩 활발하게 개최되었으나 본래의 목적인 긴장완화나 사건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고 북한의 도발사건을 중심으로 입씨름만 하는 형태로 일괄하게 되었으며 북한은 회의장을 그들의 평화공세를 위한 모략·비방·억지주장으로 일괄된 정치 선전장으로 활용하여 왔다. 이때에 군정위의 공동감시 소조 기능이 북한의 거부로 중단되었다.

다. 1970년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은 대화와 도발의 이중전략을 본격화 하기 시작하였다. 남·북한 간에는 1972. 7. 4 공동성명⁹⁷⁾이 채택되었으며, 북한은 1971. 7. 29 제319차 군정위 본회의에서 정전을 평화로 전환하기 위한 7개항을 제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1971. 8. 25 제 320차 회의에서 유엔사측은 비무

97)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북측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하였고, 북한의 박성철 조직지도부장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부장과 회담을 진행한후, 쌍방이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조국통일을 할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에 관하여 1972.7.4일 7개항의 성명서로 발표하였음

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개간사업에 협조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피차 구체적인 합의실패로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1973. 4. 10 제338차 본회의에서 북한측은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 내용으로 미군을 포함한 외국군 철수, 남북한 군대를 각각 10만 이하로 축소, 작전물자 및 군수물자 반입금지, 남북한 무력행사 금지등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화정책을 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은 공격용 땅굴굴착과 의도적인 긴장을 조성하였다. 1974년 제1땅굴이 발견되었으며, 1975. 6 판문점에서는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부대대장 해리슨 소령이 북한군으로부터 구타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편, 평화공세를 펴는 기간 중에도 군정위에서의 쌍방의 주요 의제는 비무장지대 무장화, SR 활동, 땅굴 관련 항의 및 비난등이 주조를 이루었다. 특히 1976. 8. 10 북한의 도끼만행 사건⁹⁸⁾은 휴전 50년사에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점에서 주목이 된다.

첫째, 이 사건은 미군 장교(중대장과 소대장)가 북한군의 집단폭행으로 피살됨으로서 휴전 이래 처음으로 미국이 북한의 대미 도발에 대해서 힘으로서 단호한 응징태도와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둘째, 북한 김일성이 다급한 나머지 처음으로 유감의 메시지를 유엔군측 군정위대표에게 전달함으로서 사건이 일단락 되었다. 곧 북한의 속성과 행태는 힘의 논리만이 적용될 수 있다는 교훈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⁹⁹⁾

라. 1980년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군정위의 활동은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연평군

98) 1976년 8월 18일 오전 10시경 미군 장교 2명과 사병 4명, 한국군 장교 1명과 사병 4명 등 11명이 판문점 ‘돌아오지 않는 다리’ 남쪽 국제연합군측 제3초소 부근에서 시야를 가리는 미루나무의 가지를 치는 한국인 노무자 5명의 작업을 지휘·경호하고 있을때, 북한군 장교 2명과 수십 명의 사병이 나타나 도끼와 몽둥이 등을 휘두르며 폭행,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살해하고 나머지 9명에게는 중·경상을 입힌 뒤 사라진 사건으로 사건 직후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데프콘 3호’를 발령하고 전투태세를 갖추는등 전쟁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이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사과문을 국제연합군측에 전달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9월부터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 남과 북의 분할경비로 되었다.

99) 황원탁, 전개논문, p.13.

5, 6회 정도의 군정위 본회담이 개최되었다. 1980년대에 한국에서는 10.26 및 12.12사태가 발생되었으며, 안보 및 경제 발전면에서 비교적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북한은 1960, 70년대의 대남침투에 의한 통일전선 전술이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1980년대부터는 유화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 5월 16일 제 401차 군정위 본회의부터는 종전에 호칭하던 ‘미 제국주의 군대’를 ‘미국군대’로 ‘남조선괴뢰군대’를 ‘남조선군대’로 바꾸어 부르고, 중국군 통역장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호칭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기에 들면서 다시 강경자세로 선회하게 되었는데, 기간중 주요의제는 팀 스포리트 훈련참관 교류와 유해송환문제¹⁰⁰⁾ 등이었으며 주요 사건으로는 1983. 10. 버마 랑군 폭탄 테러사건, 1988.2. KAL 858기 폭발테러사건, 1984. 11.23. 판문점 소련인 관광객 마투조크의 망명시 총격전 발생 등을 들 수 있다.

마. 1990년대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 구 소련의 붕괴와 동구 공산권의 몰락, 그리고 1994. 7. 8. 김일성의 사망으로 북한은 안팎으로 체제위협을 받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북한 대화기피와 대·미 접근정책의 적극화라는 방법을

100) 유해송환문제는 협정 제13항의 규정으로 이를 위하여 쌍방은 한국전에서 사망한 인원의 유해 및 시체를 일괄 처리하기 위해서 「쌍방 군사인원 시체 인도, 인수에 관한 행정상 세목의 양해」를 1954. 8.17.일 군정위 제47차 본회의에서 비준하였고, 이에 따라 1954. 9.1-10.30일까지 2개월 동안에 유엔군측 유해 4,091구, 공산측 유해 13,528구를 일괄 송환한 후 위“행정상 세목의 양해” 1-19항은 1954.10.30일부로 폐지하고 ‘20항’ 즉 “본 양해가 폐지된후 어느 일방이 자기측 지역 내에서 상대방에 속하는 ‘군사인원의 시체’를 발견하는 경우 쌍방 비서장을 통하여 이러한 시체의 인도.인수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만을 유효토록 하여 이를 근거로 의사체 등 쌍방의 군사인원의 시체 및 유해를 송환해오고 있다. 한편 한국전 군사인원의 유해 일괄 송환 후, 북한 지역 미군 유해 문제는 ‘80년대 후반기부터 미-북한 정부간 협의를 통하여 미측에서 보상금 지불을 조건으로 재개되어 1990년부터 2003년말까지 총 394구의 미군(추정)유해를 발굴 송환 받았으나, 남한 지역에서 발굴된 북한군(추정)유해 95구는 북측의 거부로 ‘적군 묘지’에 안장되었다. * “통일되면 자동적으로 회수 될테니 그 자리에 가만히 놔두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임

채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그대로 군정위 활동에도 반영되어 기간중 군정위의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주한 미군의 역할 변경 일환으로 군정위 수석 대표에 한국군 장성을 임명하자¹⁰¹⁾ 북한은 이를 기화(奇貨)로 노골적인 휴전협정체제의 무실화기도(無實化企圖)를 시작하였다. 그 일련의 주요 책동을 사건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도표와 같다.

<표 3-1> 북한의 휴전협정 체제 무실화 책동 주요내용

일 자	내 용	비 고
'91 .3.25	군정위 수석대표 한국군 장성 임명	신임장거부
'92. 5.29	군정위 본회담 중단(460차회의)	
'93. 4. 3	중감위 체코 대표단 철수	체코연방분리 ('93. 1. 1)
'94. 4.28	군정위에서 북측 대표단 철수	
'94. 5.24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설치	장성2명, 대좌1명
'94. 6. 6	군정위 비서장회의 중단(510차회의)	
'94. 12.15	군정위 중국대표단 북경으로 소환	
'95. 2.28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 축출	
'96. 4. 4	MDL 및 DMZ유지 관리 의무 포기선언 '96.4.5~4.7 :판문점에 무장병력 투입시위	DMZ 출입 인원 에 대한 식별표시 중단
'99. 10.25	북한지역 발굴 미군유해 판문점 송환거부	
'01. 9. 19	유엔사 역할 중단 요청 서한 전달	유엔 참전국

101) 1991년 3월 25일, 당시 유엔군 사령관은 군정위 수석위원직에 그 당시 한미연합사 부참모장였던 황원탁 육군소장을 임명하고 신임장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은 신임장 접수 거부를 시작으로 휴전체제 무실화를 노골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바. 200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는 6.15 정상회담이후 한국에는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반면 미국에게는 부시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 한국문제에 관한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군과 직접 협상을 시도하려고 획책하고 있다.¹⁰²⁾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2001년 9월19일부터 10월 17일간에 북경을 방문한 북한 판문점 대표부 대표 이찬복 상장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북경주재 유엔사 연락장교 파견국 대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해당국가들이 유엔군사령부에서 역할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유엔사 해체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본인 명의의 서한을 전달하였다.¹⁰³⁾

제2절 베트남 휴전협정(1954)의 체결과 이행결과

1. 체결배경 및 경위

가. 체결 배경

베트남은 약 1천년간 중국의 영향을 받아오다가 1802년 프랑스의 원조로 베트남국을 수립한 후 1883년 라오스·크메르와 함께 불령 인도차이나 연방으로 프랑스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다. 그러다 프랑스의 식민통치에 저항하는 베트남인의 독립투쟁은 1930년 호찌민의 주도아래 인도차이나 공산당이 결성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제2차 대전 발발을 계기로 호찌민의 인도차이나 공산당은 여타의 대중조직을 흡수, 베트민¹⁰⁴⁾을 결성하여 반불·반제 운동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하면

102) 2004. 5. 26일 남북한은 휴전이후 최초로 남북간 장성급 최초접촉인 '남북한 장성급회담' 회담을 금강산에서 실시하였다.

103) 서한전달 국가는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벨기에, 네델란드, 필리핀 7개국였음

104) 베트남 독립연맹(Vietminh : Vietnam-Doc lap-Dong Minh)의 약자이다. 혁명가들은 공산당만의 항불 통일전선의 조직은 불가능하다고 보아 1941년 새로이 베트민을 결성하였는데, 호찌민을 서기장으로 뽑고 당면의 임무로서 항불,항일을

서 무장투쟁이 시작되었다. 베트남은 2차 대전 직후 하노이와 사이공을 각각 점령, ‘베트남 민주공화국’(DRV)¹⁰⁵⁾의 수립을 선언했으나 국제적 승인을 얻지 못하였고, 북위 16도선을 경계로 북부와 남부에 각각 중국군과 영국군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베트남에 진주하게 되었다.¹⁰⁶⁾

그러다 베트남 북부 지역에 국민당과 관계를 맺고 있던 베트남 보수세력이 득세하자 호찌민은 북베트남에서 중국군을 철수 시키기 위하여 1946년 1월 프랑스가 베트남에 재진주하는 것을 용인하였고, 그 후 북부지역 총선거를 실시, 정치적 정통성을 획득하였다. 그러자 프랑스는 베트남 민주 공화국을 연방내의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통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프랑스가 이를 지키지 않자 프랑스와 베트남 민주 공화국 사이에 ‘8년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프랑스와 베트남 민주 공화국간의 ‘8년 전쟁’은 1954년 디엔비엔프 전투를 끝으로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승리로 종결되면서 동년 7월 20일 2년후 남북간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 베트남을 수립 하기로 합의한 ‘제네바 휴전협정’이 체결되게 된다.

나. 체결경위

제네바 회의는 교전 당사자들간 직접 협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강대국간의 협상에 의하여 시작 되었다. 즉, 1954년 1월 동·서관계 전반을 토의하게 된 미·영·불·소 4개국의 베를린 외상회의에서 몬로토프 소련 외상이 한국 및 인도지나 문제 등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확대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하자, 이튼 영국외상이 동의하여 성립 된 것이다.¹⁰⁷⁾

따라서 이 제네바 회담은 1954년 4월말에 열렸는데, 먼저 한국 문제를 토

위한 대 연합군 협력과 민주 베트남의 독립을 결의하였다

105)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의 약어로써 1945년 9월 하노이에서 호찌명이 수립한 ‘베트남 민주주의공화국’ 임시정부를 말한다.

106) 2차대전 이후 연합군측의 계획에 따라 전후 인도차이나 반도의 관할을 규정한 포츠담 선언에 의거, 잠정적으로 베트남을 북위 16도선을 따라 그 이북은 중국이 그리고 그 이남은 영국이 임시 관할하게 되었다.

107)국정원, “베트남의 분단과 통일”, 『각국의 통일체제 변환사례집』 2003, p.349.

의하였다. 회담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미국은 공식적으로 철수를 선언하고 5월 8일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던 인도차이나 문제에 관한 2차 토론에 참가할 엄지버만 남겨 놓은채 정작 대표인 델레스(John Foster Dulles)는 귀국해 버렸다. 동회담의¹⁰⁸⁾ 주역은 영국과 소련이었고, 베트남국(바오다이 정권)을 함께 대표하여 프랑스가 참가했다. 그 상대측으로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참가했으며 그 외 라오스 왕국과 캄보디아 왕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등이 참가했다.

7월 20일 프랑스와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휴전협정에 조인했다. 다음날 최종선언문이 공포되었다. 그런데 이 선언문에 대하여 미국과 바오다이 정부는 서명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 최종 선언문을 인정하며 무력으로 이것을 뒤집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¹⁰⁹⁾

제네바 휴전협정은 베트남 휴전협정, 라오스 휴전협정, 캄보디아 휴전협정¹¹⁰⁾과 ‘최종선언’ 그리고 미국과 바오다이정권에 의한 단독선언으로 구성된다.

2. 협정의 내용

가. 내용

제네바회담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7월 20일의 인도차이나에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인도차이나의 프랑스 연합군 총사령관과 베트남 민주공화국 인민군 총사령관 사이에 조인된 쌍무 휴전협정인 ‘베트남에서의 적대행위중지에 관한 협정’과 7월 21일의 ‘최종선언’인데 최종선언은 영국, 중화인민공화국, 소련, 캄보디아, 라오스, 프랑스, 베트남 민주공화국

108) 제네바회담에는 미국 · 영국 · 불란서 · 중공 · 소련 · 캄보디아 · 라오스 · 남베트남 · 북베트남 9개국이 참가하였음.

109) 이것은 명백히 만약 미국이 아닌 다른측의 무력에 의하여 최종선언문의 내용이 뒤집어질 경우에는 미국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방법으로 자의적인 행동을 취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110) 제네바협정은 인도차이나 전역에서 계속된 8년여의 전쟁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3국가의 대 프랑스 식민 항쟁이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내용의 각개의 협정으로 구성되었다.

순서로 구두선언에 의해 동의되었다.¹¹¹⁾

1) 베트남에서의 적대행위의 중지 에 관한 협정

1954년 7월 22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던 이협정은 모두 6장 47조로 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대략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치, 병력의 결집과 민간인 처우, 군사원조, 국제감시위원회등에 관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1장은 임시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설치 규정으로, 북위 17도선을 중심으로 잠정적 군사분계선을 확정하여,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고 300일 내로 남. 북으로 재집결을 완수하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로의 출입제한을 강조하였다.

제2장은 협정이행에 관한 주요절차와 원칙들에 관한 내용으로, 휴전조약의 발효개시와 재집결에 관한 방법, 재집결 지역에서의 정치적, 행정적 통제로서, 베트남에 통일을 가져올 총선거 때까지 양측 재집결 지역내의 민간행 정부는 본 협정이 규정하는 재집결된 군대의 관할하에 둔다는 것과 재집결이 시행되는 기간동안 민간인에게도 주어지는 남·북 양지대로의 이동의 자유, 무장해제, 군대의 이동, 장비·보급품의 철수에 관한 규정들으로써 특히 적대기간 동안에 행해진 모든 베트남인들의 행위에 대한 보복이나 박해는 금지되고 민주적인 자유가 보장될 것을 명시하였다.

제3장은 새로유입되는 군대와 무기, 군수품, 군기지에 대한 금지조약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으로써, 이 조항들은 베트남이 국제적 냉전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고려되어 있다. 남·북을 막론하고 전체 베트남에는 외부로부터 어떠한 종류의 군장비·무기류의 반입 새로운 군사기지의 설립이 금지된다. 그리고 양측의 재집결 지역내의 외국의 통제를 받는 여하한 군사기지의 설치도 금지되어있다. 또한 양측은 어떠한 군사동맹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들이 무력행위의 재개나 침략적 정책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제4장은 전쟁포로와 민간인 억류송환을 규정하였고

제5장은 전사자 처리문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111) 최덕희, “베트남 문제에 관한 1954년 제네바회담 고찰”, 석사학위논문 (한국의 국어대학원, 1984), p.43.

제6장은 합동위원회와 국제감시원회(ICC) 설립에 관한 것으로 캐나다·인도·폴랜드의 3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의 대표가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임무와 휴전조항의 위반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사반의 사건에 대해 취해질 방법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건의는 대부분 다수결에 의하지만 적대행위 재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위반사항이나 위협에 대한 경우에는 위원회 3개국의 만장일치를 보아야만 가결토록 되어 있다.

2) 최종선언

최종선언은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난 다음날 각국 대표단들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미국의 협정조인 거부로 말미암아 이에 동조한 베트남 공화국이 참가하지 않은 채 7개국의 대표들만 구두로써 찬성을 하였다.¹¹²⁾ 이것은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에 관한 휴전조약에 동의한다는 내용인데 휴전협정에서 대략 윤곽이 그려진 정치적·행정적 협정을 더욱 상세히 하였다.

모두 13조로 이루어진 최종선언은 본 협정이 적대행위를 종식 시킨것에 만족을 표하며 협정의 내용에 찬성하고 인도차이나 3개국이 명실공히 독립국이 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며 앞으로 회담 참가국들은 인도차이나 3개국의 내정간섭을 자제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최종선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트남의 정치적 장래에 관련된 조항들로 제6조¹¹³⁾와 제7조¹¹⁴⁾이다.

112) G.H.Kahin & J.W.Lewis. eds, *The United States in Vietnam* (New York : Dial Press, 1967), p.56.

113) 최종선언 제6조 “본회의는 베트남과 관련된 협정의 근본목적이 적대행위 정지를 위한 군사문제의 해결이라는 것, 군사경계선은 결코 계속적인 정치적 혹은 영토적 경계를 해석되어서는 안될 것임을 승인한다. 본회의는 본 선언 및 적대행위정지협정의 제 조항의 실시가 가까운 장래 베트남에서의 정치적 해결에 필요한 전제를 만들어 낸다는 확신을 표명한다.”

114) 최종선언 제7조: “본회의는 베트남의 정치적 제문제의 해결이 독립,통일 및 영토보전의 제 원칙을 기초로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베트남 인민은 비밀 투표에 의한 자유로운 총선거의 결과 수립될 민주적 제도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또한 달성된 평화의 충분한 진전을 보장하고 국민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대행위 정지 협정에 정해져 있는 국제감시 및 감독위원회 구성국 대표에 의하여 조직되는 국제위원회의 감독하에 1956년 7월에 자유선거가 시행될 것임을 선언한다. 이 문제에 관하여 1955년 7월 20일부터 쌍방지역 당국의 책임있는 대표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다.”

나. 문제점

제네바 휴전협정은 북위 17도선을 잠정적 군사분계선으로 남북을 분단할 것과 2년 이내에 남북 베트남 통일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북쪽의 호志明정권(월맹)과 남쪽의 바오다이정권(월남)으로 양분되게 되었다.

그러나 제네바협정은 그것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형식과 주체(主體)의 측면에서 문제를 지닌 것이었다.¹¹⁵⁾

첫째, 형식의 측면에서는 이 협정이 서명되지 않은 합의에 의한 협정이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 즉 최종선언이 조인되지 않았으므로 2년 내에 베트남에서 실시될 선거가 공식적인 공약이기보다는 단순한 계획에 불과한 듯이 행동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조약의 명확한 이행을 위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둘째로 주체의 문제는 더욱 중요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협정의 주체는 베트남민주공화국(북베트남)과 프랑스당국이였다. 미국과 베트남공화국(남베트남)의 바오다이는 협정에 조인하지 않았다.¹¹⁶⁾ 미국과 베트남공화국의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이후의 과정에서 제네바협정의 규정을 따르지 않게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즉 미국은 협정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베트남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으며, 남베트남정권은 협정에 조인하지 않았으므로 선거와 같은 그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상황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지니게 된 것이다.

또한 프랑스는 베트남에서 자신의 지배를 계승할 확실한 정치세력을 규정하지 않고 철수함으로써 협정의 준수여부를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협정을 존중할 계승자의 미지정은 협정의 준수여부를 불투명하게 만들었고, 협정의 합

115) 윤충로, “베트남 혁명 과정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6), p.150.

116) 미국은 마지막까지 협정에 조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적인 압력과 국내의 반전여론에 의해 협정을 형식적으로나마 승인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과 더불어 베트남공화국(월남)은 남부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정치적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담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프랑스군 사령부가 해체된 1956년 4월 26일 이후에는 베트남공화국이 협정에 조인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

법적 기반을 파괴하였으며 새로운 군사적 적대상황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베트남에서의 반혁명의 전조였으며 지속적인 혁명적 상황의 도래를 암시하는 것이었다.¹¹⁷⁾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도차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제네바 회담은 결실이 맺어 지면서 군사적인 정전에는 성공했으나 정치적 해결에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3. 체결당시의 관련 당사국의 입장

가. 프랑스

베트남민주공화국(DRV)에게 수세에 몰린 프랑스는 제네바 회담내용이 베트남의 분할(分割)뿐 아니라, 삼각주¹¹⁸⁾에서의 완전한 철수 그리고 DRV(이후로는 월맹이라 칭함)와의 무기반입 제한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기꺼이 협상할 정도로 절박하게 되었다. 특히 1954년 4월 미국·영국·프랑스·소련의 4개국 외상회담이 개최되었을 때는 프랑스는 전쟁수행 의도를 상실하고 전쟁에서 빠져나갈 길만 찾아야 하는 입장이었다.

결국 프랑스는 하는 수 없이 인도차이나 3개국의 독립과 자결권에 대한 공약을 하여야만 되었다. 당시 휴전회담이 결렬된다면 프랑스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이란 인도차이나 전투부대를 보강하기 위해서 징병안을 국회에 내거나 아니면 인도차이나에서 전면 철수하는 길 뿐 이었다.¹¹⁹⁾

나. 베트남 민주공화국(월맹: 호찌민 정권)

월맹측도 나름대로 휴전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우선 휴전에 타협함으로써 자신들의 더 많은 사상자와 물질적 손실을 막을 수 있었고, 궁국

117) 윤충로, 전계논문, p.151.

118) 베트남 북부의 '홍하'강 삼각주으로써 프랑스연합군 나바르장군과 DRV의 보.구엔 지압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상호 전략적 요충지로서 작전주도권을 두고 격전을 벌인 곳

119) 최덕희, 전계논문, pp.19-24.

적으로 그들의 승리가 확실한 이때에 더 이상의 군사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미국의 무력개입을 자초하여 더욱 많은 군비가 소요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월맹측의 고위지도자들은 앞으로 대량 파괴를 피할 수도 있는 회담을 거부함으로써 불행한 결과가 발생할 때 그 책임을 떠맡고 싶지 않았다.

월맹 내부적 요인 이외에도 휴전의 필요성은 있었다. 즉 그것은 8년간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국토는 완전히 고갈되었고 국민들간에는 전쟁에 대한 권태감이 급증되었다.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릴라 전투 방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그들로서는 가능한 한 유혈사태를 종식시켜 최대의 정치 목표를 달성 시켜야만 했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월맹측은 협정이 전적으로 이행된다면 자신들이 철수한 남부에 그들의 정부를 재수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관할하던 지역으로도 그들의 통치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월맹측은 제네바회담에서 이미 군사적으로 이긴 전쟁에서 정치적으로 승리할 것을 기대했으며 총선거 실시의 공약을 얻어냄으로서 그들이 17도선 이남의 광대한 지역을 일시적으로 넘겨주는데 동의하게 되었다. 이러한 약속이 없었다면 월맹은 전국토의 반도 안되는 곳으로 그들의 군대를 철수시키는데 반대했을 것이며 이러한 철수가 영구히 지속되리라는 암시가 있었다면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¹²⁰⁾

다. 베트남공화국(월남: 고딘디엠 정권)

베트남 분할이 제네바에서 공인되기 전인 1954년 6월 30일, 베트남의 바오다이 황제는¹²¹⁾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하여 남부베트남을 별도의 독립주권

120) 상계논문, pp.24-28.

121)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1940.9.23 일본군이 베트남에 진주 한후 45.3.9 일본은 불령 인도지나 총독부를 강제 폐쇄 조치하고 베트남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바오다이정권을 수립하였으나, 2차대전 종료후 46.1월 베트남에 재진주한 불란서는 호찌민의 베트남 민주공화국과는 별도로 49.6월 바오다이를 국가원수로하는 베트남국을 수립함. 베트남국은 후일 수상였던 고딘디엠에게 정권이 이어져 베트남 공화국(월남)이 됨

을 가진 국가(베트남국)로 인정받고 고딘디엠을 수상으로 임명하지만¹²²⁾ 한국의 독립을 존속시키기에는 너무 늦었다. 더욱이 제네바회담이 끝난 후인 1955년 1월 1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별도의 독립국(베트남공화국: 후에 월남)으로서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제네바회담에서 프랑스·월맹간의 직접 대화에서는 제외되었다.

베트남 공화국(이후로는 월남이라 칭함) 대표는 제네바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베트남 정부’ 유보를 표명하는 조항을 최종선언에 삽입시켜 주도록 요구하였지만 이 요구는 회담의 의장이었던 영국의 이튼 외상에 의해 거부되어 월남정부는 ‘적대행위 중지에 관한 협정’의 당사자가 되지 못했으며 ‘최후선언’에도 참가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고딘디엠 정부는 계속해서 월남이 베트남 유일의 대표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유엔안전보장회의 인정아래 베트남에 자유총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총선거로서 베트남의 장래가 결정되고 그 선거는 유엔에 의해 통제·감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²³⁾

라. 영국

제네바회담에서 오직 영국만이 처음부터 회담이 성공적으로 되도록 노력한 유일한 서구세력이었다. 이튼 영국외상은 서구 국가간의 의견차이를 화합시키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이것은 프랑스와는 달리 영국은 타협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도 없었으며 아시아 공산주의에 대한 미국의 강박관념을 공유해야 할 강요도 받지 않았기에 공산측 대표자들과 전략적인 융통성을 가지고 행동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워싱턴에서 개최된 동남아시아에 관한 5개국 군사회의 보고서에 군사적 수단으로 인도차이나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되자 영국은 이 지역에 공산주의적 제국주의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네바회담에서

122) 그후, 1955년 10월 국민투표에 의해 바오다이 원수는 실각하고 55년 10월 26일 고 딘 디엠을 대통령으로 하는 베트남공화국(월남)이 성립된다.

123) 최덕희, 전개논문, pp.28-30.

자유진영의 보호망이 될 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였다.¹²⁴⁾

마. 미국

제네바회담에서의 미국의 태도는 아주 애매모호했다. 미국은 독자적으로 행동하여 전체로서의 인도차이나가 공산세력의 통제하에 들어가는 것을 전적으로 거부하고자 하였다.¹²⁵⁾ 미국은 인도차이나 반도에 대하여 이와 같이 복합적인 정책을 수행하면서 1950년부터 1954년까지 프랑스의 전비를 부담하였다. 따라서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자국내의 정치압력과 국제적 목표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으로 제네바협정에서 불안정한 중도노선을 취하게 되었다.

결국 미국은 회의 진행에 협조하지 않았고 협정에 전적으로 찬성하지도 않았으며 또 반대의사를 명백히 하지도 않았다.

바. 소련과 중공

서방측과는 달리 제네바에서의 공산측의 태도는 통일되고 확연한 듯이 보였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하면 자유진영을 궁지로 몰아 넣을 수 있으며 공산진영의 여론을 최대한으로 통일시킬 수 있는가였다. 협상에 임한 소련과 중공은 만약 실패할 경우 서방측에 새로이 위신을 세워주게 되므로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무력으로 인도차이나를 장악할 방법도 고려하고 있었다.

소련과 중공은 프랑스를 계속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월맹을 설득하여 프랑스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휴전을 성립시키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산측은 미국이 동남아에 개입될 위험을 배제시킬 수 있고, 또 그들 자신의 세력을 동남아에 확장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회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유도하려 하였다. 특히 소련은 제네바회담에서 중공의 국제적 승인을 역설하였으며 서방동맹의 취약점을 간파하고 프랑스에게 EDC(European

124) 상계논문, p.35.

125) 미국의 의도는, 자유세계에 남겨진 나머지 베트남 (바오다이 정부)에 활성적이고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다.

Defense Community)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도차이나 문제의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해결을 약속하였고 또한 월맹측 대표의 제네바회담 참가도 종용하였다.¹²⁶⁾

한편으로 중공은 베트남이 월맹에 의해서 통치되기를 원하기는 하였으나 월맹이 전적으로 라오스·캄보디아를 점유하는 것은 달갑게 생각지 않았다.¹²⁷⁾

4. 협정의 이행 및 결과

휴전협정은 단지 무력행사의 정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실제적인 국토의 분할은 아니었기에 회담이 끝난 이후에도 그 전과 마찬가지로 남·북 베트남은 여전히 전(全)국토에 대한 권리주장을 계속했다. 관련 당사국들은 단지 군사적인 수단을 총선거의 결과에 의한 해결방법과 같은 정치적인 수단으로 바꿨을 뿐이다. 협정내용은 어디에서든지 민간인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했고 적대기간중의 개인이나 단체의 행동에 대한 정보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무장세력에 대한 어떤 규제도 없었고 평화적 정치활동에 대한 보장도 없었다.

또한 제네바협정에 의하면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전쟁의 당사자였고 남부 베트남의 사실상 통치권자였기 때문에 책임상 1956년 7월 통일을 위한 총선거까지 머물러야만 했는데, 협정 조인 후 1년만에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철수해 버렸기 때문에 협정이행의 한쪽 책임당사국이 사라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남부 베트남의 일부에서는 제네바 협정의 선언을 무시하는 행동을 취하였는데 1955년 4월 28일 프랑스 감독관이 철수하고 난 후에 베트남에는 기술적으로 국제감시위원단이 법적 규제를 확실히 할 수 없어 이 같은 행동을 규제하지 못했다.¹²⁸⁾

126) 박관숙 역, 『이든 회고록』 (서울 : 한림출판사, 1971), p.119.

127) Robert. F. Randle, *Geneva 1954*, (Princeton : Princeton Univ.Press, 1969), pp.190-194.

128) R.F. Raskin & B.B. Fall, eds. *The Vietnam Reader*, (N.Y: The Haddon

한편 고딘디엠 정부는 국토의 분단과 피난민의 유입으로 야기된 행정적 혼란, 다양한 정치 종교단체와 종파에 대항하여 맞서려고 노력하는 한편 총선거에 대한 협약은 계속 거부하였다. 또한 고딘디엠 대통령은 “공산진영이 공산주의보다 조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확정이 없는한 공산주의 측의 어떤 제안도 고려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경제·우편관계를 정상화하자는 월맹의 제안을 거절했다.¹²⁹⁾ 이러한 동안 총선거의 시한이 투표나 정치적 대비책의 마련 없이 지나가 버리자 월맹과 소련은 이것은 명백한 제네바 협정의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맞서, 월남과 미국은 월맹이 이미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 특히 미국은 당시 국방차관 로버트슨(Walter S. Robertson)의 1956년 6월 1일 성명서를 인용하여 월맹이 먼저 무기 및 군대의 증강 금지조항과 자유이주(自由移住)의 보장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 베트남 정책은 이미 제네바 협정체결 직후부터 분명히 나타나고 있었다. 즉, 미국은 두개의 베트남을 고정시키려는 것이 명백했다. 미국이 볼 때 철저한 민족주의자인 디엠은 1955년 10월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강력하게 지지 받은 것¹³⁰⁾으로 나타났고 그 즈음 소련이 호지명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으려는 공산측의 모순점도 드러나게 되어¹³¹⁾ 미국은 베트남의 민족주의를 공산세력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산측은 남부에 숨겨둔 게릴라들을 1956년 7월 20일 선거시한이 지나자 주민들을 살해하면서 활동을 재개시켰다. 이 같은 격랑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제감시위원회는 점점 그 권위가 떨어져서 비효율적인 것이 되었다.

고딘디엠 정부는 1956년 1월, 국가의 안보와 공공질서를 위반한다고 간주되는 주민들을 무제한으로 강제수용소에 구속시킬 수 있는 성명을 발표하여 제네바 협정을 위반하였고 북부는 전투부대의 증강으로 또한 협정을 위반하

craftsman Inc, 1965), p.90.

129) 그러나 이것은 총선실시 거부의 공식적인 명분에 불과하며 실제로 있어서는 국제감시하의 자유선거가 보장되더라도 월맹의 일방적 승리가 확실시될 것을 우려한 데 기인한다.

130) 55년 10월 남부에서만 실시되었던 선거의 결과, 조작에 의심이 가기도 했지만 고딘디엠이 98.9%의 지지를 받아 바오다이를 축출하였다.

131) Paul. Kattenburg, *Vietnam and U.S. Diplomacy, 1940-1970* in ORBIS vol. Xv. No3, (Fall, 1971), p.84.

였다. 1956년부터는 서로가 협정을 위반하여도 이제는 상대방의 위반사항조차도 위원회에 통고하지 않게 되었고 위원회도 더 이상 양측의 위반사항을 보고 받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제네바 협정은 사실상 백지화 된 것과 마찬가지로 양측으로부터 권위를 잃고 준수되지 않게 되자 제네바 회담의 공동의장이었던 영국과 소련의 대표들은 1956년 4월말부터 5월초까지 런던에서 발의한 결과 남북의 통일 선거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그 뜻을 5월 8일 자로 남북 베트남 정부 및 프랑스 정부에 통고하였다.

그후 월맹과 월남의 동족상잔은 확산되어 갔다. 그러자 미국은 프랑스대신 정치적으로 월남을 지지하고 나서서, 1961년 케네디 대통령에 이르러 미국의 월남지원은 군사관계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제3절 베트남 평화협정(1973)의 체결과정과 이행결과

1. 체결배경 및 경위

가. 체결배경

1964년 8월 2일 미국의 존슨(Lyndon Baines. Johnson)대통령은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북폭을 감행¹³²⁾, 베트남전을 급속히 확대시켰다. 이후 베트남전은 더욱 치열해져서 1966년 말에는 베트남 주둔 미군이 40만명을 넘게 되었으며, 예상외로 월맹의 저항이 완강하여 미군 사상자가 늘어나 미국은 국내적으로 반전운동이 확산되고 국내여론이 악화된 상황에 처했다. 이에 미국은 정책목표를 미군철수의 방향으로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¹³³⁾

132) 1964년 8월초 미국 제7함대 소속 구축함 매독스호가 2차례에 걸쳐 월맹 어뢰정의 공격을 받아 즉각 월맹의 군사요충지에 폭격을 단행함으로써 선전포고 없는 미-월맹전쟁이 시작 되었다.

133) James A. Narthan, and James K. Oliver,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and*

1988년 미국의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나선 공화당의 닉슨 (Richard Nixon) 과 민주당의 험프리 (Hubert Humphrey)는 모두 보수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베트남전이 중요한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베트남전의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반전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양자는 노력해야 했고, 닉슨은 “전쟁을 끝낼 비밀계획이 있다”고 공언했다. 간발의 차로 승리한 닉슨은 미국이 수용할만한 비용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또한 아이젠하워가 취임후 6개월만에 한국전쟁을 종식시킴으로써 자신의 인기를 얼마나 높였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베트남화 (Vietnamization)라 부르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다. 이는 월남군에 대한 공중 및 해군 지원은 계속하고, 미국이 제공하는 최상의 무기로 월남군을 무장시키며 미군 전투부대는 점진적으로 철수시키는 정책이었다. 이에 따라 키신저(Henry Kissinger) 대통령 안보담당 특별보좌관은 1969년 8월 파리에서 월맹의 정치국원인 레дук토 (Le Duc To)와 일련의 비밀협상을 시작하게 된다.¹³⁴⁾

나. 체결경위

1968년 3월 31일,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북위 20도선 이북의 북폭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킨 후 평화회담을 제의했고, 약 1개월후 월맹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1968년 5월 10일에 미국측의 해리만(W. Harriman)과 월맹의 쉐안 투이(Xuan Thuy)를 대표로 하는 예비회담이 시작되었다.¹³⁵⁾ 미국과 월맹, 월남, 해방전선(베트공)의 4자는 1969년 1월 25일부터 약 1년간 파리에서 48회의 본회담을 개최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1970년부터 4자회담은 수석대표가 빠지고 차석, 또는 실무대표가 참가하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공개협상이 부진한 가운데 키신저가 비밀협상안을 제기하였고, 닉슨 대통

World Order (Boston L Little Brown, 1981), pp.321-349 참조.

134) 권만학 역, 『국제질서와 세계주의 : 현대 미국 외교사』 (서울 : 을유문화사, 1996), pp.273-294.

135) 백승주, “베트남 평화협정과 월남공산화 과정의 연계성 분석”, (한국국방연구원, 1994), p.19.

령의 양해하에 파리의 한 저택에서 키신저와 레독토 외무장관 사이에 비밀회담이 시작되었다. 비밀회담은 수차례의 결렬과 중지, 협상재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12차례 진행되었고, 1971년 5월부터 급진전되어 군사문제에 있어서는 쌍방간 입장이 상당히 좁혀졌다. 그러나 정치문제에 있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1972년 1월 25일 닉슨 대통령은 비밀회담이 진행되었던 사실을 발표하고 중국과 소련을 통한 압력외교를 전개해 나갔다.¹³⁶⁾ 재개된 비밀협상에서 키신저와 레독토는 월남에 있어서 두 개의 정부, 두 개의 군대, 그리고 또 하나의 정치단체가 현실적인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데 합의하고, 그해 10월 협정초안에 합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협정안에 대해 월남정부가 거부태도를 천명하고, 닉슨 대통령도 재검토 지시를 내림에 따라 미국은 월맹에 추가 양보를 요구하였고,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에 대해 미국은 12월 말 강력한 북폭을 재개함으로써 월맹에 양보를 강요하였고 1973년 1월 8일 키신저와 레독토는 최종협정안에 합의하였다. 월남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미국은 더 이상 협정원문의 수정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월남이 계속 반대할 경우 단독조인도 불사한다고 위협하여 월남 티우 대통령의 승낙을 받아내었다.¹³⁷⁾ 그리하여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4당사자간에 ‘베트남에서의 전쟁종결과 평화회복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Ending the War and Restoring Peace in Vietnam)이 체결되었고, 협정과 관련한 4개 의정서가 미국과 월맹간에 조인되었다.¹³⁸⁾

2. 협정의 내용

가. 내용

총 9개장 23개조로 이루어진 본 협정과 4개 의정서로 구성된 베트남 평화협정은 전문에서 “베트남인들의 기본적 국민권리와 베트남 국민의 자결권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베트남에서의 전쟁종결과 평화회복, 그리고 아시아 및

136) 통일원, 『4자회담 관련 참고자료』 (통일원, 1996), pp.16-18.

137) 백승주, 전게서, pp.20-26.

138) 통일원, 전게서, p.18.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다음 여러 규정에 합의하고 이를 존중,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제 1장은 베트남 인민의 기본적 국민권리로서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은 베트남에 관한 1954년 제네바협정에 의해 인정된 베트남의 독립·주권·단일성 및 영토적 보전을 존중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제 2장은 적대행위의 종식과 철군에 관련된 조항으로 휴전일시 및 지역과 모든 외국군대의 60일 이내 철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은 포로 및 민간인 송환을 규정하고 있고, 제4장은 베트남 국민의 자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으로 두 베트남 당사자의 휴전준수 및 민족적 화해 단합 국민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 5장은 베트남 통일과 남·북베트남 관계에 대한 조항으로서 평화적 단계적 통일과 군사분계선의 잠정성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 6장은 공동군사위원회, 국제감시통제위원회 및 국제회의의 관련 규정을 담고 있다.

제 7장에서는 크메르와 라오스에서의 모든 군사활동의 금지에 관련된 내용을 합의했으며,

제 8장은 미국과 월남정부와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미국은 월남의 전후복구와 재건을 지원하기로 하였다.¹³⁹⁾

나. 문제점

베트남 평화협정은 당사자들 사이의 기본적인 입장차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체결되었으며, 협정주체 및 체결과정에서부터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협정 문안이 월남이 배제된 가운데 미국과 월맹간의 비밀협상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따라서 월남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둘째, 동협정은 월남에 2개의 주권적 실체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또다른

139) 문성묵, “평화협정개념과 주요사례 연구”, 『한반도 군비통제』(국방부,1995), pp.136-139.

무력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4당사자중 정부로 명기된 것은 미국과 월맹이며, 월남과 해방전선은 월남지역내의 두 당사자로 명기되어 있어서 어느 실체가 월남을 정식으로 대표하는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셋째, 동협정은 월남 주둔 월맹군(미국측 추계 145,000명)의 지위에 대한 문제를 월남내 두 당사자들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하여, 이를 묵인했다.¹⁴⁰⁾

넷째, 동협정의 국제적 보장자의 12개국에 베트남 분쟁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국가들이 참여함으로써 분쟁을 효율성있게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3. 관련당사국 입장

평화협상에 참여한 목표가 각기 상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평화회담 당사자들의 평화협정에 대한 기본입장도 차이가 많았다.

가. 미국

베트남 평화협상은 존슨 대통령 시절 선전적 차원의 부수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가,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 정상화협정을 목표로 전환되었다. 후자의 경우에도 선전 효과를 노린 것은 사실이나, 협정을 통한 결과물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즉, 미국에 있어서는 베트남의 정전상태를 실현시켜 전쟁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진지하고도 중요한 협상이었다.

미국은 협상조건에 있어서 국력차이를 바탕으로 한 간접자원의 측면에서 유리한 협상조건을 갖고 있었으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고 있었고, 정보의 측면에서 볼 때 절대열세였으며, 내부의 반전운동과 국론분열로 인해 협상지원구조의 측면에서도 약세를 보였다. 협상전략의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문제해결 전략을 채택했지만, 월맹의 비협조에 대해서는 대규모 폭격을 감행하는 등 경쟁전략을,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는 양보전략을 사용하기도 했다. 협상타결을 위해 미국측이 사용한 전술중

140) 전동진, 『국제적 평화보장 사례연구』(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1), pp.22-23.

특이한 것은 소련과 중국을 통한 압력외교였으며¹⁴¹⁾ 미국은 중소의 지원이 끊길 경우 월맹이 전투력을 상실하여 평화협정에 응해 올 것으로 판단했으나 실제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나. 월맹

월맹에 있어서 평화협상에 임하는 태도는 진정한 의도보다는 협상을 위한 협상의 성격이 강했다. 특히 4자간 평화협상에 있어서는 철저히 선전적 목적을 위한 부수효과 획득에만 집착했다. 미국과의 비밀협상에서는 전쟁종결에 관한 한 진지한 태도였으나, 협상과정에서는 비타협적이고, 이중적인 공산주의 특유의 협상방법을 사용하였다.

협상전략의 사용에 있어서는 저협력-고갈등 관계에서 주로 나타나는 경쟁 전략을 위주로 상황에 따라 무행동전략과 문제해결전략을 병행하였다. 협상전술의 측면에서 월맹은 미국을 압도했는데, ①민족주의라는 명분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평화이미지를 대내외에 부각시키는 전술을 사용하여 내외의 동정과 지지를 획득했고, ②월남내 해방전선의 존재를 이용하여 베트남전쟁을 월남 내부문제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간섭으로 비난했으며, ③회담진전을 바라는 상대방의 의도를 이용하기 위해 선결조건을 내세워 해방전선의 존재 인정, 북폭 중지 등 실제적인 성과를 얻었다. 평화협정 체결에 있어서도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이용해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냈다.¹⁴²⁾

다. 월남

월남의 경우 미국이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이 아닌 자국의 이익추구를 위한 협상자의 역할을 함에 따라 협상과정에서 자국의 이익을 반영시킬 수 없었다. 평화협상 과정에서 무행동 전략을 통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비밀협상에서 소외되었고 최종결과에 대한 반대의사도 미국의 위협과 회유에 굴

141) 이 당시 소련은 베트남문제가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체결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랐다.

142) 김달술, 『월남협상사례연구』(서울 : 국토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1987). pp.42-59

복하여 철회하고 말았다.

4. 협정의 이행 및 결과

베트남 평화협정 체결후 4당사자와 주변국은 후속 조치로써 공동군사위원회와 국제감시통제위원회¹⁴³⁾를 구성하고, 포로 석방을 개시했으며, 4개 당사자¹⁴⁴⁾와 관련 8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베트남에 관한 국제회의 의정서’를 체결한 후 1973년 3월 미군포로 석방 및 미군철수를 완료하는 등 협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처리하였다.

그러나, 전쟁종식은 잠시에 불과했다. 월남 티우정권의 무능을 틈타 월맹과 해방전선(베트공)의 평화협정 위반이 빈발했지만 이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월남과 해방전선 사이의 ‘정치협상회의’도 결렬되고 말았다. 결국 1973년 10월 남·북 베트남간 전쟁이 재개되었고, 1975년 4월 30일 월남은 공산화되었다.¹⁴⁵⁾

제4절 한국 휴전협정과 베트남 휴전협정의 비교분석

1. 비교 및 분석

베트남에서의 휴전협정 및 평화협정과 한국 휴전협정을 비교해 보면 많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것은 베트남에서의 협정들과 한국휴전협정의 체결배경과 경위에 있어서 근본적인 남북분단의 배경과 성격¹⁴⁶⁾, 그리고 협정의 이행 과정에 있어서 몇가지 유사한 점을 볼 수가 있다. 특히 월남전

143) 캐나다, 인도네시아, 폴란드, 헝가리의 4개국으로 구성

144) 여기서 4개 당사자란 미국, 월남, 월맹, 해방전선(베트공)을 말함

145) 통일원, 전게서, pp.19-20.

146) 베트남과 한국은 다같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왕정(王政)시절을 거친후 2차대전 기간중에는 일본의 통치하에 있다가, 대전이 종료된 직후에는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공산국가와 민주국가에 의한 남북분할 점령[베트남: 북부(중공), 남부(영국)·한국: 북부(소련), 남부(미국)]시기를 거친후 중국에는 양국모두 북부에는 공산정권이 남부에는 민주국가가 수립되어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다.

에 미국이 개입한 후, 1973년의 평화조약 체결당시의 베트남에서의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황은 현재 한반도에서의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황과 거의 유사하다.¹⁴⁷⁾

그러나 그 협정의 이행결과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즉 한국은 불안정하나마 아직도 휴전협정의 이행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베트남에서는 소위 국제법상 전쟁 종식을 의미하는 평화조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에 의하여 협정이 무시되고 무력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점이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이 유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50년 이상 한반도에서 정전과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베트남은 한국보다 정전의 강도가 더욱 강한 평화조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화 통일되고 말았는가? 그 이유를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분석 해 본다.

우선적으로 적대쌍방의 대결에 있어서 어느 일방의 지원국였던 동맹국인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지원국으로부터 철수하여 힘의 공백 상태를 초래시는 항상 전쟁재발의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의 경우에도 1950년 1월 12일 미국무장관 애치슨 선언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애치슨 선언 주요내용-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방위선은 알류우선열도로부터 일본을 지나 오키나와에 이른다. 미국은 중요한 방위거점인 유구를 계속 확보할 것이다. 유구인의 이익에 비추어 영국은 적절한 시기에 이를 국제연합의 보호령으로 이관할 것이다. 그러나 유구는 태평양 방위선의 일환으로서 불가결한 곳이므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또한 확보할 것이다. 방위선은 다시 유구로부터 필리핀으로 연결된다. 태평양 방위선의 밖에 있는 지역들로 말하자면, 군사적 침공이 발생할 경우 아무도 이들 지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혀 두고자 한다. 만일 침공이 발생하면 우선은 피침공국 국민 스스로의 저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후 국제연합의 헌장에 따라 전세계 문명 제국의 원조에 의존할 수가 있을 것이다.”¹⁴⁸⁾

주한 미군의 철수와 북한의 남침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147) 당시 월남·월맹관계 및 월맹·미국관계와 현재의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등 군사적대치 상황과 여건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148) U.S. Dept. of State, *American Foreign Policy : Basic Documents*, Vol. II (Washington D. C. : U. S. G. P. O., 1957), pp. 2310 - 28

베트남에 있어서는, 1954년 7월 20일 베트남 민주공화국과 휴전협정을 조인한 협정당사자인 불란서가 정치적 해결(통일선거)을 하지않고 임의로 철수하자 남북 베트남간에 전쟁이 재개되었다는 점, 또한 월남을 지원하던 미국이 동맹국인 월남과 충분한 협의와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월맹과 1973년 1월 27일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월남으로부터 철수하자 곧 동족상잔의 전쟁이 재개 되었다는 점이다.

‘베트남전 종식과 평화회복에 관한 협정’은 1973년 1월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되었으나 첫날부터 협정 위반사태가 발생하였고 사실상 국제감시단의 기능은 마비되었다. 다만 미국만이 평화협정을 충실히 지키면서 약정된 60일내 미군철수를 강행한 것이다. 결국 평화협정을 통해 소총 한방 쏘지 않고 주월 미군을 조용히 몰아낸 월맹은 베트콩과 더불어 월남 정부군에 대한 전면 공격에 나서 사이공을 점령했고 1975년 4월 30일 10시 14분 월남의 두옹 반민 대통령으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아냈다.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월맹이 월남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었던 데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였다. 첫째, 월맹의 끈질긴 공산주의 혁명전략전술이 효과적으로 주효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베트남은 장기간에 걸친 프랑스의 식민통치를 받아야 했고 2차대전중에는 일본군에 점령당하기도 했었다. 공산 월맹은 그와 같은 장기간의 외국지배에 대한 베트남인의 외세배척 감정을 월남 공산화에 활용하였다. 월맹은 주월 미군을 또다른 식민세력으로 몰아붙여 반미감정을 극대화시켰던 것이다.

월남적화의 둘째 요인으로는, 월남정부의 부패와 무능을 빼놓을 수 없다. 월남정부는 부패했고 무능하였으며 독재 일변도로 일관하였다. 그러한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었고 패망해야 했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닌게 아니라 54만명의 미군, 7만의 연합군, 60만의 자체병력, 세계 최첨단의 미군무기, 1천 4백억 달러의 지원비등을 갖고서도 월남은 패망하고 말았다¹⁴⁹⁾.

149) 주월미군의 수는 한때 54만명에 달했었고 한국,오스트레일리아,타일랜드,필리핀 뉴질랜드 등 5개국들이 7만여명을 파병한 바 있다. 월남 정부군 60만명을 합치

세째, 미국개입의 정당성 상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프랑스마저 패배하고 손을 떼 베트남에 개입하여 마치 프랑스 식민세력의 후계자 같은 인상을 주었다. 미국 국민들은 부패한 독재정부를 위해 미국의 젊은이들이 죽어야 하고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난 달러를 쏟아 붓는 월남전에 호응하지 않았다. 결국 미국의 월남전 확대는 이 나라 역사상 유례없는 반전시위를 불러 일으켰고, 대부분의 언론들은 미국 정부에 대한 왜곡보도로 전장의 잔혹성을 과대 보도하여, 반전무드를 들끓게 하였고 끝내 미군의 철수 여론을 초래하였다. 때문에 미국은 서둘러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가 월남적화로 이어졌던 것이다.

네째, 공산측의 속임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월맹이 서명한 '베트남 전 종식과 평화회복에 관한 협정'에 의하면 분명히 베트남 통일은 평화적 방법과 쌍방간의 협의와 합의를 거치도록 명기되어있다. 그런데도 월맹은 미군이 이 협정을 믿고 60일 이내에 모든 주월 미군을 철수하자 평화적이 아닌 무력으로, 협의와 합의가 아닌 무조건 항복으로 월남을 합병해 버렸다.

2. 교훈

비교와 분석을 통하여 검토 한바와 같이 베트남과 한국에 있어서의 안보 환경은 대부분이 유사하였지만 월남은 적화통일된 반면 한국은 자유민주 국가로서의 지속적인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영속적인 한반도의 안정보장과 평화번영을 위하여 몇 가지 교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자주국방력 건설 및 유지

국가 안보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는 자력에 의한 군사력 증강으로

면 도합 1백 20만 대군이 베트남과 싸운 셈이다. 1961년 부터 월남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던 미국은 14년 동안 1천 4백 10억 달러를 투입하였고 5만 6천명의 미군을 전사케 했다 뿐만아니라 존슨 미국대통령은 들끓는 반전시위와 이 전쟁의 확대 책임을 지고 재선출마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주월 한국군도 참전기간 중 4천 6백 87명의 전사자를 내야 했다.

자체적 균형정책(internal balancing)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왜냐면, 타국으로부터 자국이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국가 자신의 능력만으로 안보를 지킬수 있는 것처럼 최선의 정책은 없으며, 이와 같은 제재 수단은 자조(自助)행위로서 국제법에서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좋은 예를 남·북예멘의 통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북 예멘은 통일 협상을 벌여 1990년에 연방제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군대는 남북이 그 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5년간 연방제 통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로가 다른 꿈을 갖고 출발한 연방제는 사사건건 정치싸움을 하다가 결국 남북간에 무력 대결을 벌이고 말았다. 각기 독자군대를 갖고 있던 남북은 1994년 결국 전면전을 일으켰고 북예멘군이 9주일간의 전면전 끝에 남예멘군을 완전히 제압해 민주주의 체제의 새로운 통일을 이룩하였다.¹⁵⁰⁾

남·북 예멘의 통일협상은 남북간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었다. 반대로 베트남은 미국의 주도로 평화협정을 했으나 월맹의 무력공격으로 적화 통일되었고, 독일 통일은 공산 동독이 스스로 무너진 후 총선으로 민주화 통일이 되었다. 따라서 타의에 의한 협상이었든, 자의에 의한 협상이었든 협상 그 자체가 통일을 가져오지는 못했고 통일은 결국 실력이나 어느 한쪽의 자멸에 의해 이뤄짐을 알 수 있다. 한국 역시 한차례 전면전과 수백건의 도발을 가해온 공산 북한을 상대로 통일을 위한 길을 가는데 있어서 상기와 같은 역사적 내용을 교훈 삼아야할 것이다.

나. 국가 안보와 동맹정책

전항에서 비교분석을 통하여 한 국가의 존망은 동맹국과의 관계변수에 따라 그 국가의 운명이 좌지우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¹⁵¹⁾ 따라서 한국에

150) 정일화, “논단” (국방일보, 2001. 7.6), 2면

151) 실제로 한반도에 있어서 동맹정책은 한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였다. 당나라와 동맹을 체결했던 신라는 삼국중 가장 늦게 고대국가 체제를 정비한 약소국이었어서도 삼국을 통일하였고, 반면 최강국이었던 고구려는 치밀한 동맹정책을 추구한 신라와의 대결에서 멸망당하는 운명에 놓이고 말았다. 그 후에도 고려시대, 조선시대그리고 일제의 침탈기에 이르기까지 실로 동맹정책의 여하에 따른 한민족의 운명이 직결되어왔다.

있어서 앞으로 미국과의 동맹정책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한국의 번영과 미래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제 한·미간의 동맹은 50년을 넘었다. 모든 동맹은 영원할 수 없지만 최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병력의 이라크 파견문제와 관련해 한·미간 동맹정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¹⁵²⁾

동맹이란 동맹참여국 상호간의 문제에 관한 일정 기간동안의 협조를 전제로 국제문제, 특히 안보문제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 능력을 결집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주로 동맹상대국에 대한 군사적 원조의 약속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에 있어 상호간 원조를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한국과 동맹국인 미국의 국방비의 모습은 어떠한가? 미국은 공고한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바, 예를 들면 2003년에 미국 다음의 15개 국가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였다. 또한 압도적인 핵의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세계를 지배하는 공군력·해군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력 우위는 양적인 우위일 뿐만 아니라 질적인 우위라는 점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따라올 수 없는 막대한 양의 개발연구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이나 영국이 군사비 전반에 사용하는 액수보다도 많은 액수이다. 이러한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비 지출은 미국전체의 GDP의 3.5%에 불과한 것으로 패권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군사비로는 단단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¹⁵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라크전에서 막강한 군사력으로 승리하였지만 현재 이라크 전쟁의 전후처리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이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주의에 저항하는 다른 강대국들의 외교적 반발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폈던 미국의 무모함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듯이 국제질서에 있어서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국제적인 공조 없이는 독자적 안보

152) “한미양국은 오는 8월쯤 주한미군 2사단 1개여단을 비롯한 4000여명의 미군을 이라크에 투입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외교 통상부가 17일 밝혔다. 이라크로 차출되는 미군부대는 경보병 위주로 구성된 미 2사단 제2여단과 지원부대 등으로 구성될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2004.5.18, A2면)

153) 전재성, “한미동맹 50년 평가와 미래 발전 방향”, 서울대학교 세미나, 2003.

전략을 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하물며 자주국방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에 있어서의 동맹관계는 그 국가의 생존과 번영이 걸린 문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아직도 휴전 상태하에 있는 한국은 자주국방력 건설과 병행해서, 동맹국인 미국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긴밀한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및 세계안보전략 상황과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한국정부가 미·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주한 미군 감축 및 역할변화에 대비해 ‘협력적 자주국방’을 조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그러나 한 국가의 자체적 안보력 증진과 동맹사이에 선택을 할 경우 어느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는 국운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심사숙고한 구상이 선행되어야겠다. 즉, 충분한 자조력이 없는 상태하에서 힘의 공백을 초래한 동맹국의 철수는 전쟁의 재발을 가져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평화조약과 공산주의 전략전술

공산주의자들을 상대로 협상을 하는 일은 전통적으로 난해한 문제이다. 특히 공산주의자들의 협상전략의 기초는 이중성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겉으로는 평화공세를 취하는 듯 하면서 속으로는 공산혁명달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는 데 있다. 그와 같은 전형적인 예를 중국의 ‘국·공합작’(國·共合作)¹⁵⁴⁾에서 보듯이, 베트남 적화 통일과정과 현재 북한이 취하고 있는 선군(先軍)정치에서도 엿볼 수가 있다.

베트남에 있어서 월맹은 장기간의 외국지배에 대한 베트남인의 외세배척 감정을 부추기어 주월 미군을 식민세력으로 몰아 부쳐 반미 감정을 극대화

154) 국·공합작이란, 1930년 당시 장개석 국민당 정부가 공산군 소탕작전을 실시하자 피멸의 위기에 처한 모택동의 공산당은 1937. 9.22. 국공간 내전이 아니라 힘을합쳐 일본과 만주국에 대항한다는 “국민정부와 함께 국난대처 선언”을 발표 국민의 환심을 얻자 다음날인 동년 9.23. 장개석 국민당 정부는 과거를 불문하고 합작 제의를 수용하였는바, 그 결과 모택동은 표면적으로는 항일을 명분으로 국공합작에 성공한후, 이면적으로는 은밀리에 국공합작을 공산세력확장에 이용하여 결국 1949.10.1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성공하였음

시켰으며, 결국 미군철수를 유도하고 평화협정에 서명하였으면서 미군이 철수하자 무조건 항복으로 월남을 통합해 버린 속임수를 쓴 것이다.

북한 역시 외부적으로는 남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끌어가는데 어떤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을 것과 이러한 미국의 행위에 민족공조로 대처할 것을 강조하면서도¹⁵⁵⁾ 내부적으로는 “군사가 첫째이고 모든 것을 국방사업에 복종시켜야한다”는 ‘선군혁명경영노선’에 입각하여 국가를 통치하고 있다. 또한, 겉으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민족 대단결 내지 평화 통일을 회구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내심으로는 군을 최우선시하는 선군정치를 펴나감과 동시에 휴전체제 무실화를 통한 전한반도의 공산화 혁명 달성 추구의 이면을 엿볼 수가 있다. 즉, 모택동의 국공합작 직전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민족공조 우선 외세대항’제의와 유사하게 ‘남북공조로 외세(미국) 대항’을 강조하고있는 북한의 저의는 현실적 접근보다는 환상적 민족통일 감성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통일 전선전략의 일환으로써 북한의 이중적인 대남 전략을 유념하며 대처해 나감이 요구된다.

155) 2003년 7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측 대표단장 김령성은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끌어가는데 어떤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에 민족 공조로 대처할 것을 강조하였음

제4장 한국 휴전체제의 변천과정

제1절 휴전체제의 변천과정 분석

한국 휴전협정체제는 사실상 군사정전위원회(이후부터는 ‘군정위’로 칭함)의 기능과 활동여하에 따라 그 모습이 변화되어왔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군정위 기능과 기구의 변화를 통하여 휴전 협정체제의 변천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군정위가 설립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51년간 군정위의 기능·참가국·본회의의 빈도·수석위원 임명등 군정위기구 변화에 따라 그 시기를 구분하고, 군정위 활동상태에 따라 명칭을 부여하였다.

1. 제1기(적대적 협조기 : 1953.7 - 1991.3)

제1기는 1953년 7월부터 1991년 3월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 중에는 휴전 직후부터 유엔군측 군정위 수석위원으로 미군 장성이 임명되어¹⁵⁶⁾ 왔고 휴전협정 체제가 비교적 온전하게 유지되었다. 즉 군정위의 구성, 참가국, 회의빈도, 활동 등이 비교적 휴전협정 규정에 따라 실행되었던 시기이다. 기간중 60년도 전반기까지는 상호 협조적으로 본회의 활동도 활발하게 개최되었으나 1968년 ‘푸에블로’호 납북사건과 울진 삼척지역 대규모 무장침투 사건 이후로는 본회의는 북한의 평화공세·모략·비방·억지주장 등 점차 정치선전장화 되어 갔다. 그래도 군정위 기구는 휴전 협정규정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유엔측은 기간중 수석위원으로 56명의 미군장성이 임명되었고 459회에 걸친 군정위 본회의가 개최되었었다.

156) 1953년 7월27일부터 1991년 3월24일까지, 제1대 미 육군소장 Blackshear M. Brayan으로부터 제56대 미 공군소장 Jame F. Record가 역임

2. 제2기(적대적 침체기 : 1991.3 - 1994.4)

제2기는 1991년 3월부터 1994년 4월까지 약 3년간의 시기이다. 1991년 3월 25일 유엔군 사령관이 유엔측 군정위 수석위원을 미군장성에서 한국군 장성으로 교체 임명하자 공산측은 휴전협정 비서명자인 한국군 장성이 수석위원으로 있는 한 군정위 회의에 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회담을 거부함으로써 군정위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던 기간이다. 그나마, 이기간 중에는 공산측이 회담에 응하지는 않았지만 군정위 조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시기이다. 비록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으나 양측 대령급 참모인 군정위 비서장 회의로 군사정전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해 와서 1기에 비해서 침체된 활동이 있었던 시기이다.

이 기간 중에 북측은 휴전체제를 무실화시키기 위해서 군정위 대신 남한, 북한, 미군만의 3당사국만이 휴전체제를 직접관리하는 소위(所謂) '3자 군사공동기구'¹⁵⁷⁾를 구성할 것을 제의 하기도하고 남북합의서에 의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약화된 군정위 기능을 대행해야 한다고 언급 하는등, 한국장성을 유엔사측 수석위원으로 임명한 것을 기화로 휴전협정체제 무실화를 강력하게 시도하였던 시기였다.

3. 제3기(적대적 단절기 : 1994.4 - 1998.6)

제3기는 1994년 4월부터 1998년 6월 까지 약 4년간의 시기이다. 이 기간 중에 북측은 군정위 관련 기구들을 훼손시키는 행위와 성명을 대내외적으로 표출하였다. 1994년 4월 28일 군정위 철수를 발표하고, 1994년 12월 11일 중국 군정위 대표단을 철수시키고, 1995년 2월 28일 북측 중감위 국가 중 잔류

157) 북측의 3자 군사공동기구 설치 저의는 '한국정전협정'상 공식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의 완전폐기로 휴전협정을 무실화시키기 위하여 "한반도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조선인민군, 미군, 한국군장성들로 구성된 군사공동기구를 구성 평화 협정 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휴전협정을 이행 감시·감독하자는것"으로 그들은 3자회담 성사후에는 한국군을 배제시키고 미·북만의 회담을 추진하여 중국에는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 시키자는 전략의 일환임.

중인 폴란드 대표단 마저 강제로 철수시켰다. 따라서, 군정위 기구는 유엔사측 군정위만 존재하는 사실상 절반의 군정위 체제로 볼 수 있는 시기이다.

한편, 북한은 군정위 기구를 대신하여 한반도 휴전상태를 관리할 고위급 대화창구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미·북 장성급 접촉을 제의하며 휴전체제의 완전한 파괴를 기도하였으나, 한국정부와 유엔사측은 어디까지나 휴전협정규정에 따른 군정위 틀내에서의 장성급 접촉(미·북간 장성급회담이 아니고 유엔사 북한군간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에 반박하여 북측은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관련 임무포기를 선언하고, JSA에 중대급 이상의 무장병력을 투입하는 등 고의적인 위기상황을 조성하여 북·미 장성급 회담을 성취하려고 무력시위와 성명등으로 압력을 가해왔던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이 기간 중에 북측은 휴전협정과 관련된 비서장급 전문도 접수를 거부함으로써 실제로 유엔사와 북측간에 통신창구 마저 차단된 군정위 활동이 전무하였던 시기였다. 즉, 이 기간은 군정위기구 기능의 활동이 하부구조까지도 단절된 시기였다.

4. 제4기(적대적 파행기 : 1998 -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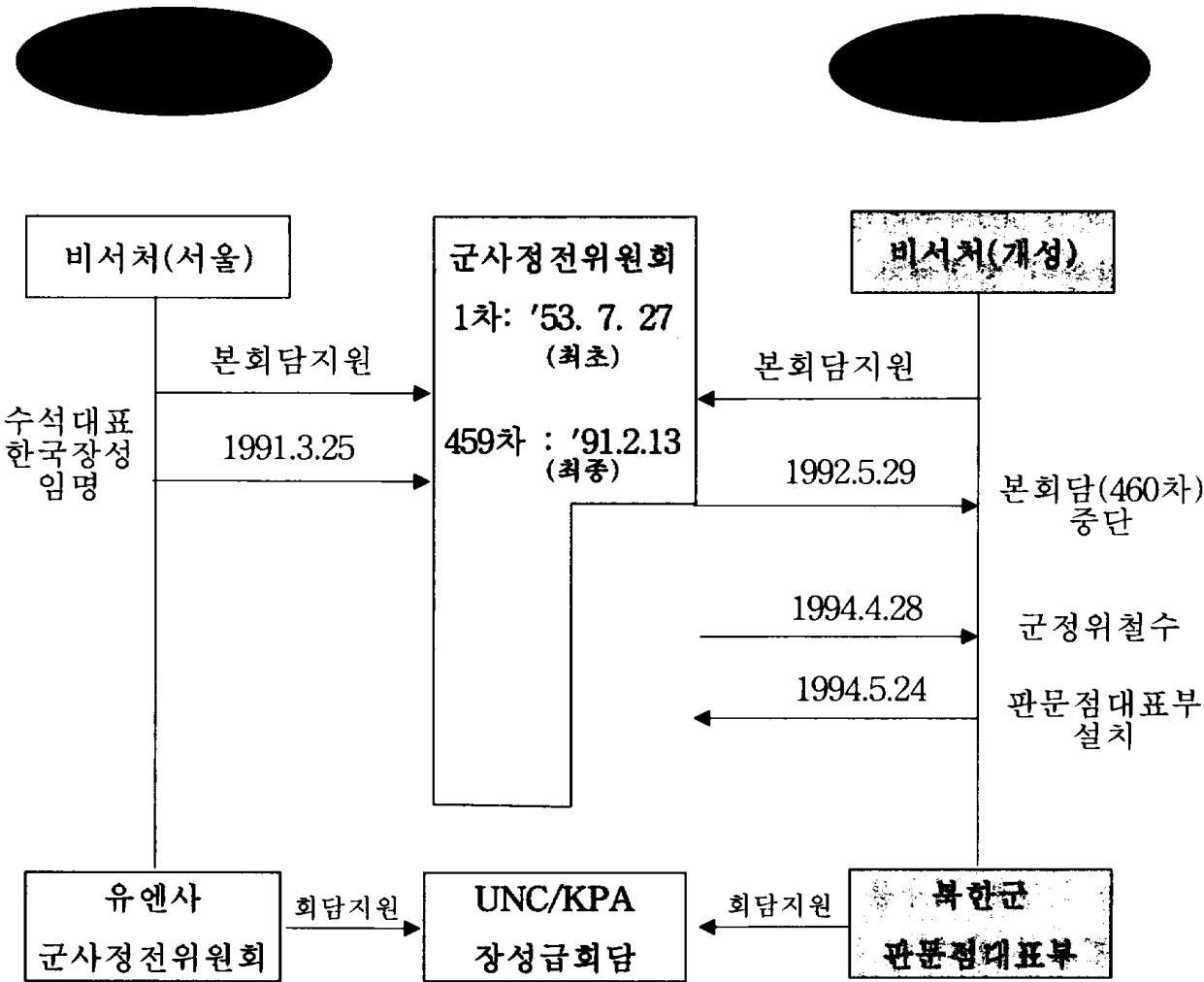
제4기는 1998년 6월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유엔사측과 조선인민군간의 장성급 회담이 군정위를 실질적으로 대체하여 파행적으로 그 기능이 수행돼오고 있는 시기이다. 아직도 유엔사측은 형식상으로 군정위를 유지하고 수석위원을 한국측 장성으로 임명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변형된 제1기로 회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왜냐면, 비록 장성급회담 대표 인원이 본래의 군정위 구성 인원보다 감소되기는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미측 장성이 수석위원으로서 복귀한 체제이다.

장성급 회담은 1998년 6월 23일 첫 회담이 열린 이래 2003년 12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회담을 가졌으며, 특히 기간중 군정위를 대신하여 2개의 '정전협정' 추가 합의사항을 서명 발효하였다.¹⁵⁸⁾ 그러나 북측은 2000 6월 15일 남·

158) 이는 '한국정전협정' 부속합의서 제29항 과 제30항으로서 비무장지대의 일부구

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태도를 일변하여 유엔사를 제외시키고 남·북간 직접적인 군사접촉을 강화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또다른 형태의 휴전협정체제 파기와 유엔사 해체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1> 군사정전위원회 체제의 변경 경과



위 그림은 50년 동안의 군정위 체제 변화를 이해 하기 쉽도록 도식화 한 것이다. 본래 ‘한국휴전협정’ 규정에 의하면 휴전체제를 관리하는 군사정전위

역의 개방후 경의선 및 동해선 및 도로의 연결을 위한 「비무장 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 인민군간 합의서」이다.

원회는¹⁵⁹⁾ 유엔군측에서 임명되는 유엔측군정위(UNCMAC)와 조·중측에서 임명하는 조·중측군정위(KPA/CPV MAC)에서 각각 5명씩 총10명의 장성 및 대령급 위원으로 구성 판문점 부근에 본부를 두고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상임위원회와 같은 비서처를 쌍방 각각 서울 및 개성에 두고 사실상의 업무(행전 및 지원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앞 변천과정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1기인 ‘적대적 협조기’에는 협정규정대로 군정위 위원 10명이 임명되어 1차(1953.7.27)부터 459차(1991.2.13)까지는 정상적으로 군정위 본회담이 개최되어 왔으나, 1991년 3월 25일부로 유엔군사령관이 유엔측 군정위 수석위원을 한국군 장성으로 임명한 이후에 북측에서 본회담(460차부터)을 거부해 오다가, 동해안에 잠수함 침투사건등 위기적 군사상황이 발생하자 고위급 군사대화의 필요성을 절감한 나머지 소위 군정위를 대신하는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하여 현재는 군정위를 대신하여 한반도 휴전체제를 관리하는 장성급회담(회담인원구성: 유엔측4명,북한측3명)에 응하여 오고 있는 실정이다.

제2절 파행적 휴전체제 : 유엔사 - 북한군간 장성급 회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한 휴전체제를 관리하고 감시·감독하는 기구인 군정위와 중감위는 북측의 무실화 책동으로 급기야는 명칭조차 ‘장성급회담’으로 변경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책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군정위 기구를 대신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장성급회담에 대하여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1. 추진경위

북측이 군정위 무실화를 책동하는 목적은 1차적으로 유엔사를 무실화 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북측은 군정위를 무실화하는 과정으로 1994년 4

159) 군정위 구성에 관해서는 앞에 각주 81)을 참고하기 바람

월 28일 군정위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후, 동년 5월 24일을 기하여 소위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라는 대표기구를 설치 평화보장 체제 협상을 위하여 북한군과 미군간(유엔군이 아닌)에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으나 유엔사는 군정위 체제유지를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DMZ에서 발생한 미·북간 현안문제로 인하여 미·북한군간 장성급 접촉을 갖게 되었다.¹⁶⁰⁾ 이를 계기로 북측은 미군과의 직접대화를 위해 1995. 3. 2일 장성급 회담관련 북측안을 제시하면서 미·북한군간 장성급 대화를 가질 것을 최초로 공식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사측에서도 군정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성급 회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국방부와 협의한 후, 유엔사와 북한군간 장성급대화를 위한 미·북참모장교들간의 접촉을 갖고 장성급 회담을 위한 절차[안]에 일차적으로 합의를 도출 하였다. 그러나 장성급 회담 대표들의 성격은 “어디까지나 군정위 대표로서 휴전협정 관련사항을 다루어야 한다”는 한국 국방부의 입장을 북측이 거부함으로써 장성급 회담협의를 담보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한·미공동으로 일관되게 회담의 성격은 군정위 틀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회담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자, 결국 북측은 미·북간 장성급회담 제의 3년 3개월만인 1998년 6월 8일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 회담 개최에 합의하였다.

2. 이행경과

장성급회담은 1998년 6월 23일 제1차 회담을 시작으로 2003년 말 현재까지 14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회담의 주요 쟁점은 북한 잠수정 한국영해 침투에 따른 문제, 3자 군사공동기구 구성문제, 서해 해상 경계선 문제, 경의선/동해선 사업지원을 위한 합의서 비준 등이었다. 14차에 걸쳐 실시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60) 1994. 12.17일 미군 헬기의 군사분계선 월선 및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미군조종사 송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동년 12.21일 판문각에서 미·북한군간 장성급 접촉을 갖게 되었다.

<표 4-1>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회담

차수	일자	요청측	쌍방주장요지
1차	'98.6.23	쌍방합의	-KPA(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미.북간 평화협정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주장 -UNC(유엔군사령부) 북한 잠수정의 한국영해 침범에 대해 강력항의
2차	'98.6.30	KPA	-KPA 잠수정은 훈련 중 고장으로 조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승선인원을 송환할 것을 요구 -UNC 유엔사측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승무원 시체 송환가능 표명, 사실 시인,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 보장요구
3차	'98.7.16	UNC	-UNC 북한 잠수정과 무장간첩 침투 관련 항의 및 증거제시, 사실 시인 및 사과,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보장을 요구 -KPA 잠수정은 기관 고장으로 조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송환을 요구, 유엔사측이 장성급회담을 정치선전장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
4차	'99.2.11	UNC	-UNC 장성급 회담 정례화, 일직장교실간 통신선 1회 재설치, Y2K 문제해결 공동노력 등을 요구 -KPA 3자 군사공동기구 설치 촉구
5차	'99.3.9	UNC	-UNC 회담 정례화, 통신선 복원, Y2K 문제해결 촉구 -KPA 3자 군사공동기구 불수용시 장성급 회담 지속 불가 주장
6차	'99.5.15	UNC	-UNC 서해상에서 북한 함정의 선제사격은 계획적인 것이라고 항의, NLL은 40여 년 간 쌍방 존중해온 실질적인 분계선임을 강조 -KPA 총격사건은 남측이 먼저 사격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 NLL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은 유엔사측이 일방적으로 그어 놓은 선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차수	일자	요청측	쌍방주장요지
7차	'99.6.22	UNC	-UNC NLL은 40여 년 간 쌍방이 준수해 온 해상경계선으로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서해 긴장완화 위한 방안을 제시 ①사건 종결의지 대내외 천명 ②쌍방 선박은 NLL 기준 각측 해역 운항 ③함정간 신호 규정/공용주파수 설정 및 활용 ④인근 함대간 직통전화 설치 및 운용 -KPA NLL 계속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휴전협정을 파기할 것인가를 택일할 것을 요구 서해 긴장완화 위한 방안 제의 ①NLL 철회, 3자 군사공동기구 설치 ②새로운 조치사까지 남측 함정을 충돌수역에서 철수
8차	'99.7.2	UNC	-KPA 무장 충돌 예방 방안 제시 ①NLL 철회, 문제 수역에서 남측 함정 철수 ②영해 침범 및 군사도발 중지, 책임자 처벌 및 보상 ③장성급 회담에서 원칙 문제 합의 후 실무토의 -UNC NLL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보완하는 것임. 서해 사태 종결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한 합의문 제시
9차	'99.7.21	KPA	-KPA 새로운 서해 해상경계선 제시 서해 해상경계선 논의 위한 북·미·남한간 실무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 -UNC 해상경계선은 남·북 당사자간 문제임을 강조하고 이를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라 군사공동위에서 합의할 것을 요구
10차	'99.8.17	UNC	-KPA 새로운 해상경계선 설정을 위한 실무회담을 구체화할 것을 제의 -UNC 해상경계선 관련 문제는 남북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

차수	일자	요청측	쌍방주장요지
11차	'99.9.1	KPA	-KPA 결실도 없는 장성급 회담에 흥미가 없음을 표명하고, 회담 중단을 암시 북측이 제시한 해상 군사통제수역을 수호하기 위한 단호하고도 결정적인 조치 취할 것임을 강조 -UNC 해상경계선 문제는 남북간 해결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함 '99년 미군유해 미·북 공동발구 합의서 내용을 이행할 것을 촉구
12차	'00.11.17	KPA	경의선 철도연결 및 도로건설 관련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 서명 및 비준 -UNC 남측 함정들이 북측 수역으로 넘어 갔다는 북측 보도와 관련 조사 결과 사실무근임을 주장, 긴장완화 대책 토의를 위한 대령급 회담 제의 -KPA 긴장완화 대책 토의를 위한 협상기구 우선구성 요구
13차	'02.8.6	UNC	-UNC 아함정 인양작전 및 군사정전 위원회 정협 위반 조사 활동시 국제적 참관하 추진됨을 천명. 서해 긴장완화 및 충돌방지를 위한 신뢰 구축 방안 제시 ①서해 인근함대간 직통전화 설치 및 운용 ②남북 함정간 공용주파수 설정 및 활용 ③해상 활동을 위한 신호규정 제정등 -KPA 서해사태 무장충돌 재발방지 위한 대책 토의 제안, 함선 인양작전간 불필요한 긴장조성 불희망
14차	'02.9.12	UNC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 서명 및 비준 -UNC 동해선 DMZ 일부구역 개방은 남과 북에 이익을 줄 것임을 주장. UNC는 철도·도로 연결 관련 남과 북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기대함.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들에 대해 논의하기를 희망함. -KPA 합의서 채택과정에 있어서의 미측 행동에 대한 유감 표명 및 남북관계 개선 및 긴장완화노력을 과소평가 하지 말 것을 강조

출처:합동참모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5집,(서울:합참정보본부,2001), pp.116-118.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담 기간 중 2회에 걸쳐 ‘한국정전협정’ 부속합의서를 유엔사 군정위 장성과 판문점 대표부 장성간에 회담을 통하여 합의하였는바 이는 곧 북측의 ‘판문점 대표부’가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조·중측 군정위를 대신해 휴전협정 체제를 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 된다.

3. 관련당사국의 입장

가. 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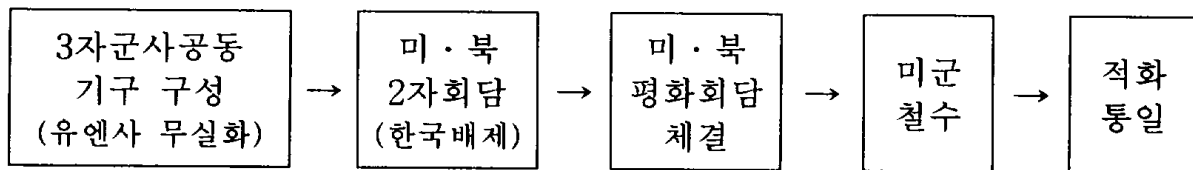
북한은 미·북간 대화유지가 가능한 장성급 회담을 지속 활용할 것이다. 왜냐면, 미·북간 대화를 지향(指向)함으로써, 유엔사를 무실화 시키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3자 군사공동기구’¹⁶¹⁾ 구성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창구 구실로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3자 군사공동기구 구성을 주장하는 저의는 ① ‘정전협정’상 공식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의 완전폐기로 휴전협정을 무실화 시켜 ② 유엔사 해체 당위성을 세워 유엔사를 해체한 후 ③ 협정서명 당사자가 아니라는 구실하에 3자 회담에서 한국군을 배제시킨 후 ④ 미·북한군간 2자 군사회담을 통하여 미·북 평화협정 체결 기반을 확보하고 ⑤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하여 중국에는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려는 ‘조국통일 3대 원칙’¹⁶²⁾을 추진하자는 데 있다.

161) 북한은 제5차 및 7차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회담시 ‘3자 군사공동기구’구성을 제의하였는바, 제안요지는 평화협정 체결시까지 한반도에 직접책임있는 한국군, 미군, 북한군 장성들로 구성된 휴전협정 이행을 감시·감독할 군사공동기구를 구성 운용하자는 것임.

162) 북한은 한반도 연방제 통일을 위해 소위 ‘조국통일 3대원칙’을 설정하여 추구하고 있는데, 조국통일 3대원칙이란 ① ‘자주’로서 이것은 미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남한을 해방하고 통일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 한미 상호방위조약 철폐, 반미 투쟁, 외세 간섭 및 의존 배격을 위한 주장과 활동을 하고 있다. ② ‘평화’로서 이것은 남한에서 먼저 혁명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한 비무력적 통일방안으로서 실현방법으로는 남북 불가침협정 체결, 북한 미국간의 평화 협정 체결, 대폭적인 군사력 감축, 무력 중강 및 군사훈련의 중지, 핵무기 및 외국 군대의 철수 등을 주장하고 있다. ③ ‘민족 대단결’로서 이것은 북한의 체제와 이념을 근간으로 남한의 체제와 제도를 시정해야 민족의 단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 친북 활동 보장, 국가정보원 해체, 콘크리트 장벽 철거 등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유엔사-북한군간의 장성급회담을 통하여 이러한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은 그와 같은 북한의 휴전체제 무실화 전략과 관련하여 상기 분석 내용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4-2> 북한의 군사정전위 운영 전략전술



결론적으로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최종목적은 한반도의 적화통일에 있는 것이다.

나. 한국

한국은 휴전협정의 규정을 존중하여, 따라서 북측의 일방적인 군정위 철수를 반대하고 유엔사 군정위 운용을 계속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유엔사와 북한군간 장성급 회담을 군사상 위기 관리 창구로 적극 활용하면서 3자 군사공동기구 구성에는 반대하고, 휴전협정을 대치하는 평화조약으로 전환시까지 현 휴전협정을 확고히 준수한다는 원칙하 북한의 군정위 운영 전략전술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다. 유엔사

유엔사 역시 현 휴전협정체제를 존중하여 군정위의 정상적인 운영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위기 관리 차원에서 북한군과의 장성급회담에는 임하되 어디까지나 휴전협정 틀 내에서 유엔사와 북한군간에 장성급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3자군사공동기구 구성에는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회담내용과 관련하여 군사적인 사항 이외 정치적 사안(事案)에 대하여는 남·북간에 직접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북측의 유엔사 무실화 책동에 대

한 대응책으로 유엔사 위상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라. 중국

중국은 현재 국가 경제개발 전략 목표에 매진하므로 한국과 북한간에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등거리 외교를 구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휴전협정에 관련한 문제는 완전히 북한측에 일임한 상태이나 북한체제에 근본적으로 위기를 가져올 군사적 긴장상황이 발생시에는 사안에 따라 북한을 우호적 지지자 수준에서 도우려 할 것이다.

제3절 한국 휴전체제의 평가 및 전망

1. 한국 휴전체제의 의의

휴전체제(*armistice regime*)의 체제라는 말은 국가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장치(*mechanism*)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이는 정부가 어떤 특정 행위에 대한 절차·규칙·제도를 창조하거나 받아들임으로써 초국가적인 관계나 국가간의 관계를 규정·통제하는 지배적 협정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⁶³⁾

그런 의미에서 한국 휴전협정체제는 대략 다음과 같이 세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휴전체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 체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휴전협정의 서문에는 “쌍방이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의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마디로 휴전협정의 일차적 목적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중지에 있다.

이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해서 쌍방사령관에게 휴전협정의 준수에 대한 최

163) 허만호, “휴전협정의 평화 체제화”, 『한국전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 (서울: 1996), p.409.

종책임과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유엔군사령관은 자동적으로 대북억제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갖게 되었고, 휴전 임무수행을 뒷받침하는 명분과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유엔군 사령관의 책임하의 전반적인 대북 전쟁억제체제가 곧 휴전 협정체제라 볼 수 있다. 164)

둘째, 휴전협정체제하에서는 남·북한 관계가 미국을 가운데 두고 간접화되어있다.¹⁶⁵⁾ 남·북한 군사관계에 있어서 유엔군 사령관이 휴전협정 준수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군이 북한의 휴전협정 위반사항에 대해 항의하려면 현재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서 항의 할 수밖에 없는 체제이다. 따라서, 휴전협정체제는 한국·미국·북한간의 관계를 규정짓는 기본적인 틀이 되고있다.

셋째, 휴전협정체제는 정전 상태하에서 위기관리체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왜냐면, 군사정전위원회는 휴전협정의 준수를 감시 감독하는 기능과 아울러 쌍방사령관의 주 통신 수단으로서 쌍방위원간에 협의를 통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이를 협의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2. 평가

앞 항에서와 같은 휴전체제의 의미와 관련해 볼 때 지금까지의 한국휴전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 할 수 있다.

첫째, 한국 휴전협정의 본래의 목적은 정치적 해결을 통하여 완전한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전쟁을 억지 하는데 있다. 비록 휴전체제가 현재는 파행적 행보를 해나가고는 있지만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휴전협정은 국제조약으로서의 국제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일방이 파기하려 든다면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비록 지난 50여년 동안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던 크고 작은 휴전협정 위반사건들이

164) 황원탁, “전계논문”(1995), p.3.

165) 이기택, 『한반도 통일과 국제정치』 (서울: 삼영출판사, 1991), p.51.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 사건들이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고 전쟁을 억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간의 관계를 규정·통제하는 지배적 규정 성격을 가진 휴전협정에 기초하고 있다 볼 수 있다.

둘째, 휴전협정 체제가 전쟁정지 차원에서는 효과적이었고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휴전체제가 남·북관계를 간접화 시킴으로서, 한국은 사실상 휴전협정의 구속을 받는 집행 당사자이고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사령관에게 책임 지워진 휴전 협정규정 때문에 북한의 휴전협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북한에게 직접 책임을 따지지 못하고 유엔군사령관에게 제반 관련문제 해결을 의뢰해야만 하는 모순이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의 본질은 남·북관계 이전에 한·미관계에서 찾아야 할 것이지만, 북한은 이와 같은 한·미관계를 그들의 대남전략에 역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휴전협정체제는 한국정부와 한국군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보지 않고 미국을 당사자로 보는 북한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소지를 제공해 온 것이다.

셋째, 휴전 상태하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고 대소 사건들을 협의 처리하는 위기관리체제로서는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오히려 본래의 휴전협정기구의 기능들이 왜곡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용되어 왔다. 다만 휴전협정기구가 쌍방간에 유사시 각방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대화와 접촉의 간접창구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점은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3. 전망

한국 휴전체제는 북한군의 일방적인 파행으로 반쪽으로 운용되고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장성급 회담으로 그 명백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비록 휴전체제의 완벽한 이행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나마 한반도에서 남북간에 긴장상태 발생시 최고지휘부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고위급 군사대화 채널이라 볼 수 있으며, 한반도의 휴전체제유지 및 위기관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남북간의 관계를 규정짓고 있는 현 휴전체제에 변화가 올 것인가? 그에 대한 해답은 현시점에서 북한자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예견할 수가 없다. 왜냐면 그와 같은 체제변화에 있어서 북한의 태도변화가 가장 큰 변수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태도여하에 따라,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남북체제에 대한 3가지 범주의 가능성을 상정 할 수 있다. 이는 ①북한이 한반도 공산적화 통일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은 파행적 또는 현재보다 더욱 변형(여기에는 호전 또는 악화 두 가지가 있을 것임)되는 현 휴전체제 상태가 지속되는 것, ②북한이 휴전상태를 청산하고 남북간에 진정한 정치적 화해를 원할 경우는 휴전체제를 폐기하고 기존의 남북기본합의서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남북합의서와 유사한 또 다른 합의서나 헌장, 또는 선언등으로 대체하는 방법, ③새로운 평화 조약의 체결이다.

현재의 북한의 협상태도를 가늠해볼 때 ②,③의 방안은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실현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③방안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진정한 평화달성 목적 외에도 공산주의 혁명 목표 달성을 위한 위장 조약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계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현시점에서 볼 때, 앞으로도 북한군은 1차적으로 3자 군사공동기구 구성 및 회담 관철을 위해 UNC-KPA간 장성급 회담에 선별적으로 호응하면서 휴전체제를 역으로 이용 휴전협정 및 유엔사 무실화 책동을 지속할 것이다.

제5장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발전방향 모색

지금까지 연구한 바와 같이 현 휴전체제를 대체하여 남북간에 평화조약이 체결되기는 요원한 일이지만, 여기서는 앞으로에 대비하여 가능성있는 방안들을 모색 해보고 어느 방안이 가장 가능성과 실리성이 있는가를 연구해 보고자한다.

제1절 평화조약 체제전환에 따른 방향과 방안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조약은 기존의 휴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평화조약을 기존의 협정 및 남북합의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 방안으로써 크게 범주를 구분해보면 ①휴전협정의 수정 방안, ②기본합의서 이행 실천방안, ③민족공동체헌장 채택방안, ④새로운 평화협정 체결방안등 이 고려 될 수 있다.

1. 휴전협정 수정방안

휴전협정의 수정방안은 새로운 평화협정이 남북한의 평화를 진정으로 보장해 주지 못하고 어느 일방의 무력통일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이는 현재의 휴전협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방안이다. 이는 월맹이 파리평화협정에 의해 주월 미군을 철수시키고 월남을 공산화했듯이, 한반도 평화협정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적화통일을 실현하려는 것이 북한의 책략이라면 우리는 차라리 현행 휴전협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¹⁶⁶⁾ 다시 말하면, 현행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휴전협정을 폐지하는 것이 남북한 관계의 복잡한 국제법적 정리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

166) 김명기, “휴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의 문제”, 『북한』 (서울: 북한연구소, 1989), pp.48-49.

이지만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오히려 현행 휴전협정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실질적이라면 평화협정을 구태여 체결하지 말고 휴전협정을 수정 및 증보하여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다¹⁶⁷⁾.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이나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휴전협정만큼 잘된 법적 장치를 다시 만들기 어렵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전쟁의 원인인 한반도의 분단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평화조약체결이나 불가침 선언 등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또한 현 휴전협정체제는 한반도 평화유지에 유엔이 관여하도록 제도화 시켜 놓고 있으며, 남·북한이 모두 유엔의 회원국이 된 지금 유엔이 관여하는 휴전협정체제의 평화유지 기능은 다른 어떤 평화협정 보다 못지 않다. 현 휴전협정은 일반적인 평화조약이나 협정의 내용인 적대행위 종료, 포로인도, 국경선 조정, 배상 및 보상, 비무장 지대 설치 등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본 협정에 의하여 사실상 평화상태가 지속되어 오므로 구태여 평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새로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제안은 ‘정전협정’ 제62항을 근거로 한 휴전협정의 수정 및 증보 방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 방안은 이미 휴전협정의 상당부분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북한의 휴전협정 무실화 전략에 비추어 휴전협정을 보완하여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북한의 태도로 보아 실현성이 거의 없다 할 수 있다. 즉, 남북한 관계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일 뿐 아니라 실현성도 거의 없다.¹⁶⁸⁾.

2.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실천방안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실천 방안은 기본합의서가 목적인 대로 잘 이행만 된다면 그것이 곧 현존하는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남북이 기본합의서 제5조의¹⁶⁹⁾ 약속을 착실히 실천해 간다면 그 결과는 곧 전쟁

167) 김명기, 『한반도 평화조약의 체결』 (서울: 국제법출판사, 1994), p92.

168) 제성호,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방안”, 국방군사연구소 주최 세미나 발표논문(1995. 10. 10.), p58.

의 유산을 청산하고 정치적 화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평화협정 또는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안은 불가침합의서에 근거하여 남북의 군사당국간에 직접적인 협상과 교류가 진전된다면 휴전협정의 군사 분계선이 불가침경계선이 되고 군사공동위원회가 군사정전의 기능을 점차로 대체해 갈 수도 있다.¹⁷⁰⁾ 즉 기본합의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최선의 접근방식을 제도화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별도의 합의가 아닌 실천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 방안은 새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도 이미 합의된 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성실한 이행과 실천을 통해 실질적인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쌍방의 이행 실천의지이다. 그리고 약간의 기본합의서 수정과정 또는 별도의 부속합의서 채택과정이 필요하다. 즉, 기본합의서 제5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동 합의서의 이행 실천만으로는 법적인 의미의 평화체제 전환이 불가하므로 남북한간에 휴전협정의 종료 또는 전쟁상태의 종결과 평화상태로의 회복을 선언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 되어야한다.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기본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과 국제법적 효력이 모호한 상태인 바, 이를 근거로 평화체제 전환을 모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사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남북기본합의서의 성실한 이행과 실천을 전제로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하여 점진적으로 평화체제 전환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 일 것이다.

3. 민족공동체헌장 채택방안

민족공동체헌장 또는 남·북연합헌장을 채택하는 방안이다. 민족공동체헌장은 남·북한간의 기본관계를 설정하고, 남·북연합의 실현을 위한 제도

169)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남북화해 제5조는 “남과 북은 현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이다.

170) 안병준, “남북기본합의서 후의 남북한관계와 평화체제”, 『통일문제연구』 4권, (1992. 3.), pp61-63.

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남·북연합은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과도단계로 평화체제를 발판으로 두 체제가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단계이다.

한국의 통일방안이 예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족공동체현장 내지 남·북연합현장을 채택하는 방법에 의해서 현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간 정치관계 규정과 함께 평화협정으로서의 핵심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의 통일방안을 흡수통일방안으로 규정하는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단기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평화조약 체결 방안

새로운 평화협정의 체결방안이다. 실현만 된다면 새롭고 독립된 평화조약의 체결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분쟁의 근본원인을 제거해야하기 때문에 실현성이 매우 어려운 방안이다. 왜냐면 새로운 평화협정의 체결은 당사자 문제의 논쟁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한국전쟁에 참전한 외국국가들의 개입가능성, 전쟁 종결작업을 위한 전쟁책임자 처벌문제, 영토문제, 배상문제등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¹⁷¹⁾. 특히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고집하고 있고 남북한이 통상 평화협정의 주요내용을 이루는 전쟁의 원인규명과 책임문제, 배상 및 보상문제 등을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분석해 보면, ①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협정은 전통적인 개념의 평화협정보다는 한반도의 현실에 맞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과거 청산정보다는 미래 지향형의 평화협정이 되어야 한다. ② 평화협정의 체결을 형식 내지 법리적 측면에 얽매어 평화체제 구축을 전제로 논의하기보다는 남북한이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합의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로 도출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

171) 이장희, “휴전협정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방안”, 『통일』(1993. 4.), p29.

어야 할 것이다. 남북평화협정 체결은 남북한간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그리고 그로 인한 군사적 균형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 될 수 있어야 된다. ③ 새로운 별도의 평화협정을 모색하기보다는 기존휴전협정이나 남북 기본합의서를 기본으로 보완을 통해 모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한국 휴전협정을 타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있어서, 형식논리에 치우친 협정의 체결문제에 연연하거나 매달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상태 구축에 필요한 실질적인 긴장완화,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방안을 갖고 우선적으로 대처 및 논의 해나감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제2절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을 위한 발전방향

1. 국제적 보장방안

평화협정에 대한 보장은 협정체결 당사자간의 신뢰와 협조만큼 좋은 보장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졌을 경우 실질적인 평화상태가 구축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간에는 전쟁을 치른 적대관계일 뿐 아니라 이러한 적대관계가 반세기(半世紀)간이나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한은 주변국상황에 항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강대국에 접해있고 각기 다른 나라와 동맹체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남·북간 평화협정의 이행과정에서 일정한 국제적 보장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만약 남·북한간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에 국제적 보장체제로서 가능한 방안을 열거해보면, ① 미국에 의한 보장방안(2+1), ② 미국과 중국에 의한 보장방안(2+2), ③ 미·중·일·러에 의한 보장방안(2+4), ④ 참전16개국과 중·러에 의한 보장방안(2+16+2), ⑤ 동북아 안보 협의체에 의한 보장방안등이 검토될 수 있다.¹⁷²⁾ 이들 방안 중에서 ④ 방안은 현재 16개 참전국의 국가사정과 국제적 보장능력의 복잡성을 고려해 볼 때 한계가 있고, ⑤

172) 통일원,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현안과 쟁점』 (1996. 12.), pp59-74.

방안은 현재 평화협정을 보장할 만한 동북아 지역 안보협의체가 없다는 차원에서 본 논문의 검토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가. 미국에 의한 보장방안(2+1)

이 방안은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이 남북한의 불가침 및 평화협정을 보장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우선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남한을 배제하려는 북한을 끌어들이므로써 한반도 안보문제와 관련된 직접당사자간의 실질적 협의가 가능하다. 한반도 정치군사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한미공조체제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공고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대 북한 영향력 확대를 통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휴전협정의 일방 당사자인 중국이 배제됨으로서 중국의 반대가 있을 것이고, 미국이 남북한 평화협정의 중립적 보장자로 참여하게 될 경우 전통적 한·미 동맹관계의 이완과 동시에 북·미 관계와 한·미 관계로 이원화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제적 보장자의 수가 적을수록 보장자의 대 한반도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비교적 간단한 방안이기는 하나 무리한 방안이다.

나. 미국과 중국에 의한 보장방안(2+2)

이 방안은 한국전쟁의 주요 4당사자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고 평화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합리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과 각기 가장 가까운 동맹관계에 있으면서 영향력이 큰 미국과 중국을 보장자로 하는 것은 가장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법리적으로도 남북한간에 우선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협정 체결을 하고 이를 한국전쟁의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이 추진 및 지지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북한도 이 방안을 가장 선호할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이 대미관계개선 차원에서 미국의 참여를 원할 것이고, 중국이 참여함으로써 대미견제 및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외세개입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일본과 러시

아의 참여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방안은 러시아와 일본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 및 통일과정에서 비협조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 결론적으로 미·중의 보장방안은 합리성, 실효성, 법리적 타당성을 고루 갖추고 있는 방안이다.

다. 미·중·일·리에 의한 보장방안(2+4)

이 방안은 미·중·일·리 주변 4강국이 모두 한반도 평화 보장자로 참여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요 관련 당사자국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실효적인 평화보장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이방안의 장점은 일본과 러시아의 참여로 미국과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장국들 가운데 어느 특정 국가간 쌍무관계가 악화됐을 경우 나머지 국가가 한반도 분쟁을 조정 및 중재할 수 있다는 장점이 '2+2' 방안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4' 방식은 모든 역내 국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차후 동북아의 안보협력체로 자연스럽게 발전될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지역 내 군사적 신뢰구축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차후 역내 군축문제 까지도 다루는 지역 집단안보기구로 확대 발전될 수도 있다.¹⁷³⁾ 그러나 주변국들이 자국의 안보이익에 따라 다양한 입장을 제각기 개진함으로써 이 경우 단기적으로 효율적인 보장에 한계가 노정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통일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정치 군사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과도한 개입을 인정 내지 제도화함으로써 한반도문제의 지나친 국제화와 주변국의 개입의 합법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자초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있다. 특히 한국은 통일과정에서 주변강국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반면 개입 또한 최소화되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이 있어 오히려 크다는 점에서 과도한 보장방안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볼 때,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의 평화협정을 휴전협정의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이 지원 및 보장하는 형식이 가

173) 전동진.“국제적 평화보장 사례연구”, 『민족통일원 보고서』 (1991. 12.), pp60-61.

장 바람직스럽고 실효적이라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해서 동북아 안보의 이해당사국인 일본과 러시아도 포함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가 구성되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안보가 집단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 국내적 보장방안

남북한 관계가 진전되어 진정한 평화분위기가 한반도에 구축되면 휴전협정은 여타 평화조약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 내지는 미군 철수로 생각하고 있는바, 북한의 이러한 사고는 결단코 차단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면 멀게는 베트남의 적화통일에서 가깝게는 예멘의 통일에서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휴전체제 운영실태에서 보듯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역시 제도적 장치만으로 완전히 보장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방이라도 평화의지가 결여된 채 휴전체제가 전환된다면 그러한 협정은 평화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다. 즉 평화를 보장해주는 것은 제도적인 틀이 아니라 평화를 실천하려는 의지와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조(自助)의 힘인 것이다.

그러나 민족적 과업인 통일과 그를 위한 중간단계로서 남북한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언제까지나 과거의 틀을 고집할 수는 없다. 국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는 것은 통일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따라서 1953년의 한국 휴전협정 체결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기타 타국의 평화 협정등 귀중한 사례들을 연구 검토하여 향후 언젠가 이루어질 한반도 평화 정착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깊은 연구는 물론 완벽한 협정안들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한국과 혈맹관계를 맺어온 미국과의 동맹정책은 물론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한반도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은 물론

현 휴전협정 체제가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국제공조를 다져야한다. 따라서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휴전협정상 합의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북한의 휴전협정체제 및 유엔사 무실화 기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유엔사와 긴밀한 협조로 강력한 대북 공동대응 체제를 강화하여야겠다.

제6장 결 론

1953년 한국전쟁의 휴전이 성립된 이래 지난 50여 년간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과 한반도의 평화는 휴전협정이라는 법적·제도적 관리구조에 바탕을 두고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한국휴전협정은 완전한 종전이 아닌 적대행위의 일시적 중지에 불과하고, 북한측의 계속적인 휴전협정 무실화 책동으로 인해 협정자체가 거의 파행적으로 운영되기에 이르렀으며, 북측에서는 현실에 맞는 한반도 평화유지를 다룰 대체기구의 필요성을 집요하게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2중적인 기본전략으로써 겉으로는 평화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안으로는 한반도 적화통일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즉, 그들이 휴전협정 체제하에서 추구하는 기본전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아직도 대남 적화통일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1차적으로는 남·북·미간에 ‘3자군사공동기구’를 실현시켜 유엔사를 무실화하고

둘째, 3자 군사공동기구가 실현되고 나면 휴전협정 서명 비당사자라는 명목하에 한국을 배제시킨 후 미·북간 2자 군사회담을 집요하게 요구한 후

셋째, 2자군사회담을 통하여는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내에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혁명력량을 강화시켜 직간접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시켜 미군철수를 유도하고

넷째, 미군철수가 실현되면 무력공격을 통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이루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의 김정일 중국 방문시에 신형 전투기 구입 시도에서도 볼 수 있다.¹⁷⁴⁾

따라서 북한의 군정위 회담전략은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군정위 기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있다. 즉, 북한은 휴전체제유지를 통하

174) 김정일은 2004년 4월 19일부터 동년 4월 21일 까지 중국방문시 중국의 신형 전투기를 구입하겠다고 제의했으나 중국측이 이를 완곡히 거절했다고 ‘홍콩상보’가 동년 4월 29일 보도했는데, 김정일이 제의한 중국산 항공기 “젠10A”신형 전투기는 미국이 대만에 판매한 F16 전투기에 상당하는 뛰어난 성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조선일보 A2[종합] (2004, 4, 30일자)

여 북한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면서, 한편으로는 평화공세를 위한 정치 선전장화 하여 심리전 전략을 구사하고 적절한 도발을 통하여 대미 접촉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휴전협정체제는 전쟁억지체제로서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지만 휴전 상태하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고 대소(大小)사건들을 협의 처리하는 위기관리 기구체제로서는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오히려 본래의 휴전 협정기구의 기능들이 왜곡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북측의 휴전체제 무실화에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시킬 수 있는 다방면의 방안을 준비하고 대비하여야겠다.

오늘날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간의 조약이란 체결당사자간의 명시적인 약속이라고는 하지만 역사상 사례들에서 보듯이 국가이익이 극도로 추구되는 현실정치에 있어서, 국가간의 조약 이행에 따른 확고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하물며 쌍방간의 적대행위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고자 맺은 군사 휴전협정(설령 평화협정이라 하더라도)은 국제법적으로도 어느 일방이 파기하고자 하면 이를 제제 할 수는 없다. 그 좋은 예로서 우리는 베트남에서의 1954년 휴전협정, 1973년의 제네바 평화협정을 들 수가 있다. 아무리 완벽한 조약이라 하더라도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을 때는 조약의 효력 측면에서 그것이 비록 역사적 기록문서의 하나가 될 수는 있을지라도 협정으로서의 역할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한국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 몇가지 대책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북 억제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하여 동맹정책을 강화해야한다. 동서고금을 통해 보더라도 일국(一國)이 다국적연맹을 도외시한채 단독으로 국방력을 완벽히 구현한 예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는 세계 최대의 군사 강국인 미국이라 할지라도 동맹국 없이는 국가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현재의 이라크전 상황은 반증하고 있다.

둘째, 국가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위하고 자조(自助)할 수 있는 자주적 국방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자조적 국방력을 갖추지 못한 채 맺은 협정은

결코 사상누각임을 베트남의 사례에서 볼수 있다. '파리평화협정'(1973.1.27)이라는 국가간에 맺어진 평화협정이 맺어 진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전쟁이 재개되어 월남은 공산화되었던 것이다.

셋째, 동맹국은 물론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통하여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함은 물론, 현 휴전협정체제가 평화체제로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도 다방면으로 국제공조를 이루어야 하겠다.

넷째, 무엇보다도 한국은 향후 평화조약 체결시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단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타협정으로의 전환에 대비한 각종 완벽한 협정안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준비해 놓아야한다.

현재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 휴전협정을 관리하고 있지만, 지금 이라도 북한이 휴전협정을 파기하고 전쟁상태로 돌아간다면, 과거처럼 유엔의 주도하에 참전 16개국이 한국을 위해 군사지원을 해줄지는 의문이다. 왜냐면, 한국전쟁 당시와는 달리 이제는 남·북 모두 유엔 가입국이 되었고, 참전 16개국 중 미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국가들이 북한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오늘날의 정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휴전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는 물론, 참전 16개국과의 관계도 긴밀히 유지하여 유사시 한국을 재지원하는 우방으로서의 관계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함이 가장 절실히 요구될 때이다.

이상의 요구들이 충족되어진다면, 한국은 현행 휴전체제하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 나가면서, 향후 휴전체제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지라도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부 록>

한국 휴전협정 관련 용어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MAC)
국제연합군(유엔군)	United Nations Command(UNC)
국련측 군정위	United Nations Command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UNC MAC)
조선인민군	Korean People's Army(KPA)
중국인민지원군	Chinese People's Volunteers(CPV)
조·중측 군정위	Korean People's Army & Chinese People's Volunteers(KPA/CPV MAC)
휴전협정(정전협정)	Armistice Agreement(AA)
휴전협정 서명인	Signatories to the AA
국제연합군 사령관	Commander-in-chief, UNC(CINCUNC)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Supreme Commander, Korean People's Army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Commander, Chinese People's Volunteers
휴전/정전/정화	Armistice/Truce/Cease-Fire
한국 휴전	Korean Armistice
추가 합의서	Subsequent Agreement
휴전협정 위반	Violation of the AA
비무장 지대	Demilitarized Zone(DMZ)
군사분계선	Military Demarcation Line(MDL)
군사분계선 표지물	MDL Marker
남방한계선(비무장지대)	Southern Boundary Line

북방한계선(비무장지대)	Northern Boundary Line
북방한계선 (해상)	Northren Limit Line(NLL)
민정경찰	Civil Police
한강하구	Han River Estuary(HRE)
공동경비구역	Joint Security Area(JSA)
회담장 구역	Conference Row
공동일직장교	Joint Duty Officer(JDO)
돌아오지 않는 다리	Bridge of No Return
유엔사 군정위 수석위원	UNCMAC Senior Member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	UNCMAC Secretary
유엔사 군정위 공동일직사무실	UNCMAC Joint Duty Office
유엔사 군정위 공동일직장교	UNCMAC Joint Duty Officer
공동감시조소	Joint Observer Team(JOT)
특별조사반	Special Investigation Team(SIT)
유엔사 연락장교	UNC Liasion Officer(UNC LNO)
유엔사 군정위 고문단	UNCMAC Advisory Group
한국군 연락단	ROK Advisory Group(ROKAG)
중립국 감독위원회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NNSC)
중립국 시찰 소조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NNIT)
군정위 본회의	MAC Meeting
비서장 회의	Secretaries' Meeting
경비장교 회의	Security Officers' Meeting
공동일직장교 회의	Joint Duty Officers' Meeting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	NNSC Meeting
현장 경비장교 회의	On-the-Spot Security Officers' Meeting

대성동 자유의 마을	Freedom Village of Taesung-Dong
자유 의 다리	Freedom Bridge
유엔사 경비대대	UNC Security Battalion(UNCSB)
미육군 중앙유해 감식소	US Army Central Identification Laboratory Hawaii(CILHI)
JSA내 유엔사 경비병 막사	Barrett Readiness Facility(BRF)
유엔사 긴급출동 대기 부대	Quick Reaction Forces(QRF)
미국방성 전쟁포로 및 실종자 업무사무국	Defence Prisoner of War/Missing in Action Office(DPMO)
공동 유해 발굴	Joint Recovery Operation(JRO)

참고 문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 강원식,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9.
- 김기옥, 「한국전쟁」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1987.
- 김명기, 「국제법원론」 (상) 서울 : 박영사, 1996.
- _____, 「한반도 평화조약의 체결」 서울 : 국제법출판사, 1994.
- _____, 「분단한국의 평화보장론」 서울 : 법지사, 1988.
- 김순규, 「현대 국제정치학」 서울: 박영사, 2000.
- 김양명, 「한국전쟁사」 서울 : 일신사, 1988.
- 김영작외, 「한국전쟁과 휴전체제」 서울 : 집문장, 1998.
- 김정건, 「국제법」 서울 : 박영사, 1998.
- 김학준, 「한국전쟁의 원인,과정,휴전,영향」 서울 : 박영사, 1989.
- 박관숙역, 「이든 회고록」 서울 : 한림출판사, 1971.
- 서용선, 「한반도 휴전체제연구」 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1999.
- 송승종역, 「북한의 협상전략」 서울 : 한울, 1999.
- 유병화, 「국제법 I」 서울 : 민영사, 1998.
- 유인태, 「한반도 군사문제의 이해」 서울 : 법문사.1996.
- 유제현, 「월남전쟁」 서울 : 한원, 1992.
- 이기택, 「한반도 통일과 국제정치」 서울 : 삼영출판사, 1991.
- 이한기, 「국제법강의」 서울 : 박영사, 1986.
- 장명순, 「북한군사 연구」 서울 : 팔복원, 1999.
- 장효상, 「현대국제법」 서울 : 박영사, 1987.
-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서울 : 지평서원, 2000.

최문길, 「21세기 동북아 안보역학구도와 한국안보」 서울 : 국방대학교, 2001.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 「전사」 서울 : 신오성기획 인쇄사, 200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서울 : 국방부, 1989.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회, 「한국동란 1년지」 서울 : 국방부, 1956.
 국방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제1권, 서울 : 국방부, 1986.
 합참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제5집, 서울 : 국방부, 2001.
 합참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제6집, 서울 : 국방부, 2003

2. 논문

김영기, “남한과 북한의 법적 기본관계와 통일 전후의 사법적용에 관한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김경하, “한국전쟁의 전개과정과 휴전협정에 관한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김영식, “Geneva 회의와 냉전체제”, 한국정치 외교사학회, 「휴전협정의 현재적 재조명」 97 하계 학술세미나발표 논문, 1997.
 김은수,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민경길, “한국정전협정의 이행실태”, 「서울대학교 법학」 제41권2호, 서울대학교 법학 연구소, 2000.
 박형일, “평화협정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한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전략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신복룡, “한국전쟁의 휴전”,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전쟁의 휴전, 한국전쟁과 휴전체제」, 서울 : 집문당, 1998.
 안광찬, “헌법상 군사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양진삼, “전쟁기 중국지도부와 북한 지도부 사이의 모순과 갈등”, 군사편찬

- 연구소, 「한국전쟁사의 새로운연구 2」, 2002.
- 윤충로, “베트남 혁명과정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이한기, “한국휴전협정의 제문제”, 국제법 학회, 「국제법학회 논총」 제3호, 1958.
- 장승재, “한국전쟁과 판문점 역할에 관하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제성호, “한국정전협정의 이행실태”, 서울대학교 법학 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제41권2호, 2000.
- _____, “정전협정의 법적재검토”,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87호, 2000.6.
- _____, “휴전협정의 현재적 재조명”,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하계학술 세미나」 자료, 1997.
- 차기문, “한반도 정전체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 최덕희, “베트남 문제에 관한 1954년 제네바회담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 황원탁, “정전체제의 문제점과 대책”, 국방군사문제연구소, 「한국의 정전 체제유지와 평화체제 구축방향」, 1995.

3. 기타

-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안보문제연구 자료편」 서울: 국방대학교, 1997.
- 국방부, 「외무부 조약 목록집」, 1985.
- 민족 통일 연구원,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1997.
- 통일원, 「96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 관련 자료집」, 1996.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4자회담 분과위원회 운영방안 연구」, 1999.

한국전략문제연구소, 「4자회담 경과와 북한의 협상전략」, 2000.

한국 「정전협정」 한국어 · 영어 · 중국어사본, 1953.

II. 국외문헌

1. 단행본

Acheson, D. *The Korean War*, New York : W. W. Northon, 1971.

Bowett, D. W. *United Nations Forces*, London : Stevens, 1964.

Dinh, Nguyen. Quoc. Dallier, et , *Alain Pellet, Droit International Public*,
3 edition Paris : L.G.D.J. 1987.

Great Britain, *The War Office, The Law of War on Land, Part III*,
London : H.M.S.O., 1958.

Goodrich, L.M. *Korea : A Study of United States Policy in the United Nations*,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56.

Higgins, 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Through the Politic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London : Oxford Univ, Press, 1966.

Kahin, G. H. & Lewis, J. W. eds, *The United States in Veit-nam*, New York : Dial Press, 1967.

Kim, Myung-ki. *The Korean War and International Law*, Claremont : Paige Press, 1991.

Randle, Robert .F. *Geneva 1954*, Princeton: Princeton Univ.Press, 1969.

Raskin, R. F. & Fall, B. B. eds. *The Vietnam Reader*, N.Y:The Haddon craftsman Inc,1965.

Starke, J. G.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9th edition, London: Butterworth, 1984.

Vatcher, W. H. *Panmunjum*, Westport : Greenwood, 1958
U. S. Department of State, *American Foreign Policy* : Basic Documents
Vol II 9(Washington D.C. : U.S.G.P.O, 1957), pp. 2310-28.
UN Review of the Multilateral Treaty-Making Prosess,
ST/LEG/SER. B/21, 1985.

2. 논문

Kenneth. P. Landon, "The 1954 Geneva Agreements" in *Current History*
Vol. 50 No.294(Feb. 1966).
Rusk, D. "Memorandum of Conversation in Department of State", in
FRUS : 1951(Washington, D.C.: GPO, 1983), Vol.VII Part I.
Kattenburg, P. "Vietnam and U.S. Diplomacy", 1940-1970 in *ORBIS*
Vol. xv. No3 (Fall, 1971).

3. 기타

American Foreign Policy 1950-1955, Washington, DC : U.S. Governemnt
Printing Office, 1957
Indochina-Vietnam, Cambodia and Laos 20th Century Page Avalon
Home Page
USMARC Cataloging Record

ABSTRACT

A Study of the Changes on the Korean Armistice Regime for National Security Problems in S. Korea

Song, Suk Myung
Major in East Asia Region
Dept. of Intl Area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resent solutions to the problems related to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which has been the only international legal apparatus to keep the Korean peninsula secure and peaceful for the last 50 years. The following is the summary of the study result from this thesis.

The First study result is the rectification of the term Korean armistice agreement. Depending on the scholastic points of view,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has been called either cease- fire agreement or armistice agreement. The term Cease- fire agreement was used in the treaty between the U.N. and the North Korea- Chinese alliance in 1953, but the study from this thesis proves the term Korean armistice agreement to be a more proper term to indicate this treaty between the two sides.

In todays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treaties are elucidative promises. But, in the world of international politics ,where the nationalistic interests are pursued in an extreme degree,

the implementation of the treaties are not always clear. So when the two hostile sides make a peace treaty to stop aggression temporarily, the international law can not sanction any one of the two sides in the event of the breach of the treaty. Armistice agreement in Vietnam in 1954 and the Geneva Convention of 1973 are great examples. Even the perfect treaties cease to be binding when one side of the treaty has no intention of carrying out the treaty. The treaty may have a historical value but no effect as an agreement.

Although Korean armistice agreement has contributed a great deal to suppressing aggressions in Korean Peninsula, it has a few problems.

Firstly, Korea couldnt participate at the treaty as a signatory despite its international status as a signatory power. Thus, when carrying out and solving Armistice- related problems, South Korea has been in unfair positions compared to the North Korea.

Secondly, Enough emphasis on mitigating the tension and decreasing the numbers of casualty in implementing the agreement has not been made. For example, the confirmations of the Naval demarcation line has not been made clearly. The imbalance in establishing the GPs between North Korea- Chinese alliance and the U.N. in Panmunjom J.S.A. is also a part of the problem.

North Korea does not acknowledge the military government committee. So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two sides to come to a mutual understanding of the supplementary Cease- fire agreement. Despite the differences and the difficulties, we should always put effort in solving the problems and also prepare for the possible transformation of armistice agreement.

So this thesis presents several solutions to the transformat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

Firstly, Korea has to play a role as the signatory power. To

achieve this goal, diplomatic effort as well as the preparation for the possible transformat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 needs to be made.

Secondly, strong military power support is needed in order to carry out the supplement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agreement. Treaties made without the military support is like a castle built on a sand field. We witness the fall of the South Vietnam in less than a year from when the Paris Peace Treaty was made.

Thirdly, reinforcing the alliance policy is vital in keeping the Korean peninsula secure.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world, no country has been successful in creating a strong defense power by itself. Even the U.S. Force, the strongest military force in the world, would have difficulties in carrying out its goals without the help from its allies. This statement proves to be true in the cases of Iraq war.

Although U.N. is supervising the Cease- fire agreement in Korea, not all the 16 allies under U.N. command will be able to help us in fighting the possible North Korean aggression. Both the North and the South Korea are members of the U.N. Except for U.S. and France among the 16 countries has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So it wouldnt be easy for all of them to support South Korea in case of war with North Korea..

Thus, close alliance with U.S. as well as other allies is crucial in order to keep the cease- fire condition stable. Also preparations to the North Korean actions and the studies of the agreement need to be made.

As long as all the matters mentioned above are fulfilled, we should be able to not only keep the Korean Peninsula secure but also deal with any possible changes in the armistice system.